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및 「풍수해 재난 I」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풍수해
재난(태풍, 호우)」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
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1
제2절 법적 근거	1
제3절 적용 범위	2
제4절 위기 형태	2
제5절 위기 경보	3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6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7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 심	7
1. 상 황	7
2. 조치사항 및 절차	7
제2절 주 의	8
1. 상 황	8
2. 조치사항 및 절차	8
제3절 경 계	9
1. 상 황	9
2. 조치사항 및 절차	9
제4절 심 각	11
1. 상 황	11
2. 조치사항 및 절차	11
3.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13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조치사항 및 절차	14
1. 조치사항 및 절차	14
제2절 "집중호우" 발생	17
1. 조치사항 및 절차	17
2.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19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21
가. 1차 보고	21
나. 2차 보고	21
다. 피해보고	22
라. 재난상황 보고서식	23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24
가. 재해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24
나. 보고체계	24
3.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	25
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25
나.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26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태풍·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과 관련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법적근거

가. 작성근거

- 1)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 2) 「풍수해재난 I」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 적용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 자연재해대책법
- 3) 기상법
- 4) 재해구호법

다. 관련규정 및 지침 등

-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3절 적용범위

- 가. 태풍·호우 재난 위기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의 대비/대응활동에 적용
- 나. 태풍 및 집중호우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에 적용

제4절 위기형태

가.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으로 인한 학교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나. 집중호우는 지형적인 특성과 강우전선의 불안정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학교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교사동 침수 등의 피해 발생

제5절 위기경보

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호우 빈발 시기 ○ 교과부 재해대책반 - 준비단계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운영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교과부 재해대책반 I 단계 가동 - 근무인원 : 호우/태풍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교과부 재해대책반 II 단계 가동 - 근무인원 : 1명+필요 산하.소속기관 	○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교과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근무인원 : 4명+전체 산하.소속기관 ※ 전체 산하.소속기관 비상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선포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태풍, 호우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2.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가. 태풍, 호우발생 상황파악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 진로 및 호우진행 상황 주시

나. 상황판단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주재)

- 총괄반에서 중앙재난종합상황실의 상황 판단 참고 및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여부 판단

다.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의 위기경보 발령 접수
- 태풍관련 위기경보를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로 발령사항 전파
 - 위기경보 발령수준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요청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 위기대응 지침

가. 태풍

- 태풍재난발생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동 실행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태풍진행상황 주시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등
- 태풍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사전 대응조치 실시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 추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및 협조체계 가동
 - 학생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조치

나. 호우

- 호우재난발생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동 실행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호우상황 주시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등
- 호우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초동조치 실시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추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및 협조체계 가동
- 학생대피 등 신속한 인명피해 예방조치

2. 위기판단/고려요소

가.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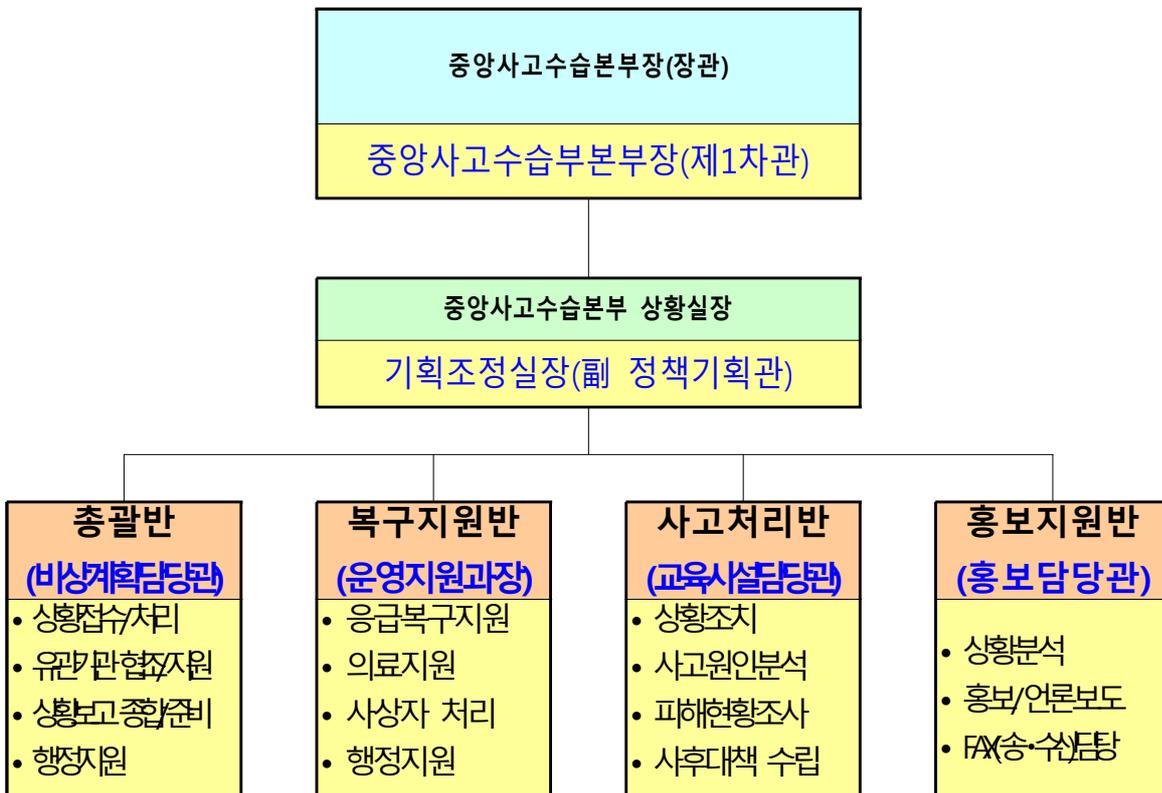
- 태풍의 진로, 중심기압, 크기, 강도, 및 동반되는 풍속, 강수의 량
-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등

나. 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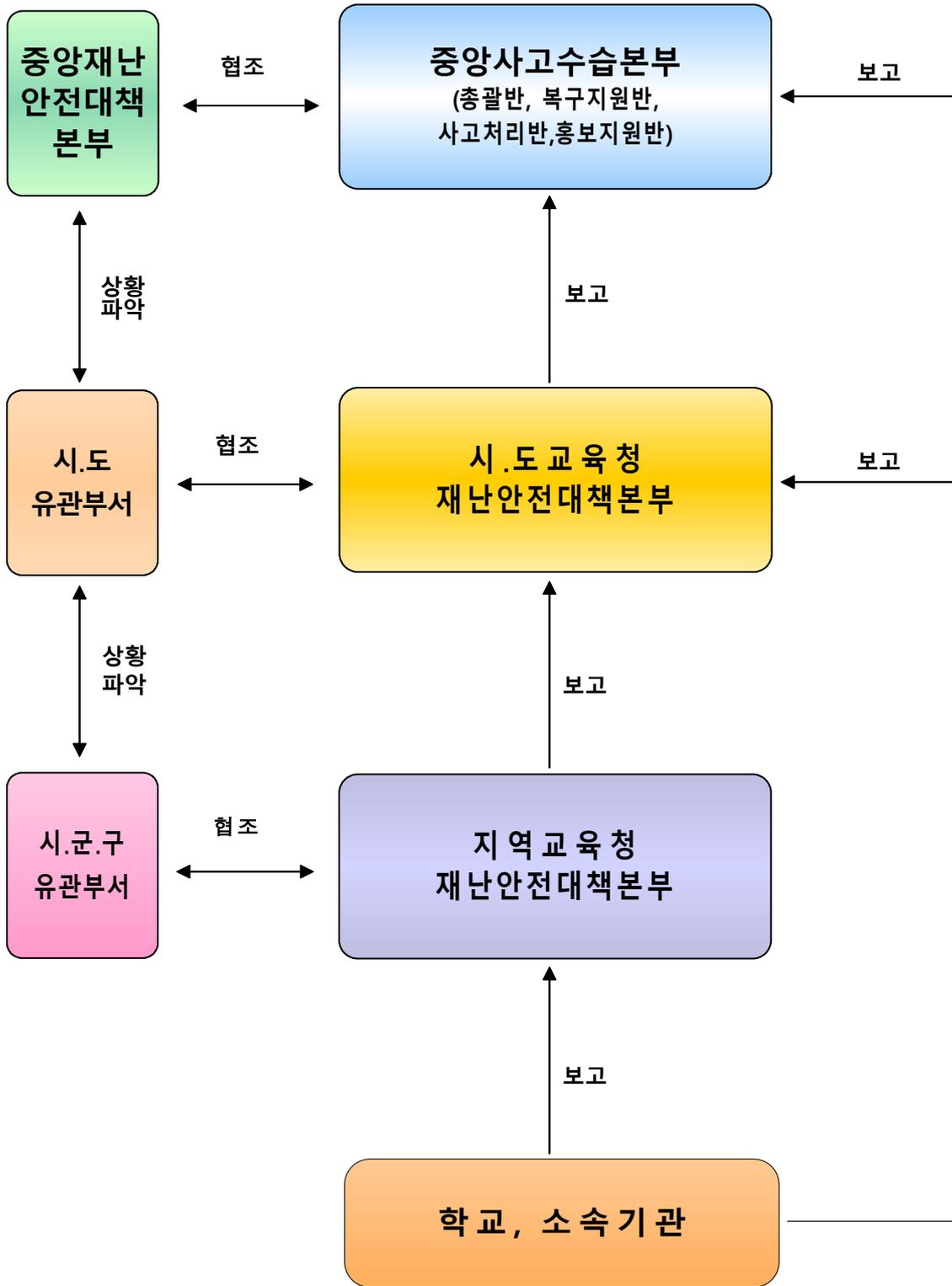
- 호우의 강우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게릴라성 호우
- 호우피해 예상지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①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수행 체계도



②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체계도



- ③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 교육과학기술부
- 위기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상황대처 강화조치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태풍, 호우 대비대책 강화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 운영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예상지역 사전점검 및 출입통제 지시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
 - 재해지역 학교에 대한 비상 수업대책 마련 및 시행
 - 비상연락망 확인 및 장비, 인력 대기조치 지시
 - 학교시설물의 산사태 및 상습침수지역 대피준비 등 사전조치 지시
 - 필요시 이재민 수용에 따른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수용 조치
 - 신속한 응급복구 대응체제 구축여부 확인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 심(Blue)

1 상 황

- 태풍/호우 빈발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 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운용
 - 사전대비조치 지시 및 확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나. 조치 내용

(1) 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정보 확인
- 태풍발생시 태풍의 진행방향, 호우발생시 호우상황 파악
 - 위성영상 등을 통한 지속적인 태풍의 진행방향과 규모를 파악
 - 비구름의 이동방향과 예상 강우 규모를 파악

(2)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운용

□ 사전대비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지시 및 확인
 - 전자결재 공문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재해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일제점검 지시 및 점검결과 확인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지시 및 조치 결과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지시 및 확인
 - 전자결재 공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일제점검 지시 및 점검결과 확인
 - 점검결과 작동상태가 불량하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체 조치 지시
- 각급 학교 학생수업 결손에 따른 응급수업대책 마련 지시 및 확인

(3)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및 학생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제2절 주의 (Yellow)

1. 상 황

- 태풍/호우 예보특보 또는 태풍/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 재난상황 모니터링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 재해대책반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사전 점검.확인

나. 조치 내용

(1) 재난상황 모니터링

- 재난상황 모니터링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호우의 발생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2)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태풍의 진행경로, 우리나라 내습시기 호우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 강우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및 규모 등 대처계획을 논의
- 소방방재청이 발령한 태풍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전파

(3) 재해대책반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비상근무명령 및 필요시 관련부서 차출 협조
 -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에 의거 1단계 운영

(4)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5)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및 학생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6)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물, 학교 신.증축 공사현장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제3절 경 계(Orange)

1. 상 황

- 태풍/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목록

-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 재해대책반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태풍 및 집중호우 강도를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조정
-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사전 점검.확인

나. 조치 내용

- (1)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 재난상황 정보수집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호우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 총괄 반장 : 본부장(장관), 부분부장(제1차관)
 -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예.경보상황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전파, 유.무선 및 FAX를 활용한 2차 전파
- (2)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태풍의 진행경로, 우리나라 내습시기, 호우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강우량 등을 참고하여 대처계획을 논의
 - 소방방재청이 발령한 태풍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전파
- (3) 재해대책반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비상근무명령 및 필요시 관련부서 차출 협조
 -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에 의거 2단계 운영
- (4)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토록 지시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5)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및 학생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 (6) 학교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별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물, 학교 신.증축 공사현장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7)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해당지역의 기상특보(태풍.호우강도 등)를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검토

- (8)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사전 점검.확인

제4절 심 각 (Red)

1. 상 황

- 태풍/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이행
- 학교시설물의 이재민 수용시 시설 점검 및 수용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

나. 조치 내용

(1)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 재난상황 정보수집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호우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 총괄 반장 : 본부장(장관), 부분부장(제1차관)
 -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예.경보상황 전파: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 통해 전파, 유.무선 및 FAX를 활용한 2차 전파

(2)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태풍의 진행경로, 우리나라 내습시기, 호우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강우량 등을 참고하여 대처계획을 논의
- 소방방재청이 발령한 태풍/호우 경보 발령 접수 및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전파

(3)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비상근무명령 및 필요시 관련부서 차출 협조
 -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에 의거 3단계 운영

(4)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토록 지시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5)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확인

- 학교시설물 및 학생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6)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물, 학교 신·증축 공사현장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 지시

(7)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시행

- 해당지역의 기상특보(태풍, 호우강도 등)를 고려하여 "심각단계" 발령시 최대한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직접 등교시간 조정 등 수업대책 시행 가능
- 소방방재청의 "재난종합통보시스템"을 통해 방통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등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사항 등 방송 조치

(8)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점검, 수용

3.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종합상황관리 및 재난상황 분석 판단
- 재난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응상황 파악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지원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복구지원반
 -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
 - 피해발생시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난 대처사항 확인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사고처리반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보고 확인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에 따른 대처방안 지시
 - 이재민 수용을 대비한 학교시설물 점검 및 확인 지시
- 홍보팀
 - 재난상황별 학생행동요령 및 응급 수업방안 홍보실시
 - 이재민 발생시 학교시설물 수용방안 홍보실시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조치사항 및 절차

1.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목록

조치 내용	비고
(1) 태풍정보 확인.분석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참고하여 자체대책 논의 (3) 태풍진행상황의 보고 및 전파 (4) 위기경보 발령상황 접수 및 전파 (5)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의 운영 (6)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및 비상근무 강화 지시 (7)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대처상황 확인 (8)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9) 학교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10) 학생,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확인 (11) 필요시 비상수업대책 수립 및 시행 지시	재해대책반 및 중앙 사고수습 본부

나. 조치 내용

(1) 태풍정보 확인.분석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의 예상진로, 우리나라 내습 시기 등을 분석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참고하여 자체대책 논의

- 총괄반에서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기상청 등으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태풍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여부 판단
- 지속적인 태풍정보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

(3) 태풍진행 상황의 보고 및 전파

- 태풍 상황보고서 작성

- 태풍의 진행상황 및 예상경로 등을 분석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대처상황파악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재난상황에 따른 대응조치 요청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 총괄 반장 : 본부장(장관), 부분부장(제1차관),
 -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예.경보상황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전파, 유.무선 및 FAX를 활용한 2차 전파
- (4) 위기경보 발령상황 접수 및 전파
 - 【8월 2일 09시】. 주의(Yellow)
 - 【8월 3일 09시】. 경계(Orange)
 - 【8월 4일 09시】. 심각(Red)
- (5)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사전조치 및 대응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시 총괄반의 결정 등을 거쳐 추가 편성 등 탄력적으로 운영
- (6)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 태풍상황의 진행에 따라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토록 지시
- (7)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대처상황 확인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8)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및 학생 피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 (9) 학교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침수, 산사태 등 피해발생 우려지역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물, 학교 신증축 공사현장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상습침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토록 지시
 - 기타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10) 학생,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확인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한 피해상황 확인
 - 시·도교육청별로 발생한 피해상황 파악
 - 피해상황별 대처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이재민 수용 및 구호현황 파악
- (11) 필요시 비상수업대책 수립 및 시행 지시
- 태풍으로 인한 교육시설물 등의 피해로 인하여 학교 휴교.휴업.단축수업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한 인근학교의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지시
 - 등교가 불가할 경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e-Learning 학습방안 수립 및 시행
 - 해당지역의 기상특보(태풍.호우강도 등)를 고려하여 "심각단계" 발령시 최대한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 소방방재청의 "재난종합통보시스템"을 통해 방통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등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사항 등 방송 조치
 - 시.도교육청에서는 SMS문자,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사항 등을 통지

제2절 “집중호우” 발생

1.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조치 내용	비고
(1) 집중호우 발생정보 확인.분석	재해 대책 반 및 중앙 사고수습 본부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참고하여 자체대책 논의	
(3) 집중호우 상황 보고 및 전파	
(4) 호우 위기경보 “경계” 발령상황 접수 및 전파	
(5)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의 운영	
(6)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강화 지시	
(7)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대처상황 확인	
(8)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9) 학교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10) 학생,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확인	
(11) 필요시 비상수업대책 수립 및 시행 지시	

나. 조치 내용

- (1) 집중호우 발생정보 확인.분석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재난발생상황 파악
-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참고하여 자체대책 논의
 - 총괄반에서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기상청 등으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호우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여부 판단
 - 지속적인 호우정보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
- (3) 집중호우 상황보고 및 전파
 - 호우 상황보고서 작성
 - 집중호우의 지속가능성, 확대범위, 예상강우량 등을 분석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대처상황 파악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재난상황에 따른 대응조치 요청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 총괄 반장 : 본부장(장관), 부분부장(제1차관),
 -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예.경보상황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 통해 전파, 유.무선 및 FAX를 활용한 2차 전파
- (4) 호우 위기경보 "경계" 발령상황 접수 및 전파
 - 집중호우 관련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로 발령사항 전파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학교 시설물, 학생 보호조치, 휴교.휴업.단축수업, 이재민 수용시 준비 및 점검사항 등의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 요청 및 행동요령 전파
- (5)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사전조치 및 대응단계
 - 총괄반에서의 결정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시 추가 인원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영
- (6)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강화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
 - 호우상황의 진행정도에 따라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토록 지시
- (7)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8)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및 학생 피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 (9) 학교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침수, 산사태 등 피해발생 우려지역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물, 학교 신 증축 공사현장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상습침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토록 지시
-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주변통제 등 조치지시(필요시 학생대피 실시)

(10) 학생,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확인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한 피해상황 확인
 - 시·도교육청별로 발생한 피해상황 파악
 - 피해상황별 대처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이재민 수용 및 구호현황 파악

(11) 필요시 비상수업대책 수립 및 시행 지시

-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물 등의 피해로 인하여 학교 휴교.휴업.단축수업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한 인근학교의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지시
- SMS문자, 방송매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사항 등을 통지
- 등교가 불가할 경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e-Learning 학습방안 수립 및 시행

2.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종합상황관리 및 재난상황 분석 판단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해 피해상황 파악
- 재난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응상황 파악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지원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학생안전대책 수립 이행

□ 복구지원반

-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
- 피해발생시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난 대처사항 확인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사고처리반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조치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에 따른 대처방안 지시
- 학교시설물의 이재민 수용시 시설물 점검 및 수용

□ 홍보팀

- 재난상황별 학생행동요령 및 응급 수업방안 홍보실시
- 이재민 발생시 학교시설물 수용방안 홍보실시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가. 1차보고 : 중심기압 000hpa 규모 태풍 발생시

◆ 태풍(호우)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섬 나하 남쪽 약 0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00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2. 상황분석 : 초대형 태풍(중심위치, 중심기압, 최대풍속, 강풍반경, 강도 및 크기, 진행속도 등 포함) 발생
3. 피해예측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에 산사태 및 시설물 붕괴 및 침수 등이 예상됨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 소집 및 피해상황 파악

나. 2차보고 : 중심기압 000hpa 규모 태풍 발생

◆ 태풍(호우)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 현재 00지역에 규모 00의 태풍이 강타하였습니다.
2. 상황분석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 피해 상황 파악
3. 피해상황 : 00시 및 인접 0개 시군의 학교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학교시설물 붕괴, 교사동 침수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 하며 전력 및 통신이 두절된 상태임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소집 중이며, 피해지역의 학생 구조 실시 중

다. 피해보고 : 태풍(호우) 발생시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구 분	대학명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00%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활동 현황 ○ 학생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요청 사항
경미 피해	00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00%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라. 재난상황 보고 서식

재난상황 보고

기관명 : (직인)

1. 재난개요

가. 재난원인 :

나. 재난기간 :

다. 재난지역 :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나. 시설피해

기관명	행구 정역명	학교 급별	설립 구분	학교명	피해내용					복구대책	
					시설명	구조	피해 정도	피해량	피해액	복구 소요액	복구 계획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다. 수업대책 :

라. 기타 특이사항 : 학교 휴교조치, 학생 응급복구 동원 등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가. 재난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 교육과학기술부(본부)

구분	부서명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FAX	실무자 H.P
		과장	사무관	실무자			
교육과학	비상계획담당관실	노병석	김창환	이정훈	(02)2100-6189	(02)2100-6193	018-232-8356
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조일환	이승재	조두행	(02)2100-6301	(02)2100-6305	010-9780-2010

나. 보고 체계

- 시.도교육청.대학 등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각급 기관에서는 등 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재난 발생 시 비상계획담당관실, 교육시설담당관, 사립대학지원과, 전문대학정책과에 보고

부서명	소관업무	연락처
비상계획담당관실	- 위기관리 업무 총괄	T:(02)2100-6190 ~ 2, F:(02)2100-6193
교육시설담당관	- 재난관리 업무 총괄	T:(02)2100-6300 ~ 4, F:(02)2100-6305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대학 재난관리	T:(02)2100-6930~4, F:(02)2100-6935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전문대 재난관리	T:(02)2100-6401~4, F:(02)2100-6405

- .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사립대학에서는 재난발생시 위의 부서로 즉시 재난상황 발생 보고

3.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
 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단계 : 준비체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준 : 「태풍·호우 주의보」 발령 시 ○ 근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 00 ~ 18 : 00 (교육시설담당관) - 18 : 00 ~ 24 : 00 (당직자가 검임) 	재해대책반
2단계 : 경계체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준 : 「일부지역 태풍·호우 경보」 발령 시 ○ 근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담당관 직원 1명(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9 : 00 ~ 24 : 00(해제시 까지) 	재해대책반
3단계 : 비상체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준 : 전국 대규모 재해 발생시 ○ 근무대상 : 4명(아래 각과 1명씩 교대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획담당관실 직원 1명(교대 근무) - 교육시설담당관 직원 1명(교대 근무) - 사립대학지원과 직원 1명(교대 근무) - 전문대학정책과 직원 1명(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9 : 00 ~ 익일 09 : 00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구 분	임무 및 근무요령
1단계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상황근무내용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기상특보 전파 ○ 산하기관 상황근무 및 사전재해 예방조치 지시, 확인 및 대처요령 전파.지시
2.3단계 (경계. 심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상황 파악 집계 및 보고서 작성 ○ 긴급대처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지시 ○ 기타 재해상황 전반을 관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체계 : 담당자→과장→실.국장→차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상황시 : 담당자 → 장관, 차관, 실.국장에게 즉시 보고 [긴급상황 전파(2개의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과부 정책기획관→교과부 당직실→시.도교육청 당직실 ② 교과부 정책기획관→학교지원국장→시.도교육청 부교육감 ○ 근무지 : 해당부서 사무실 ○ 비상근무체제로 변경 시 전일 근무조의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 근무교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 08:30 ~ 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 휴일 :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교대 근무 ※ 08:0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 ○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풍수해(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및 「풍수해 재난 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대설 재난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30
제2절 법적 근거	30
제3절 적용 범위	30
제4절 위기 형태	30
제5절 위기 경보	31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32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33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 심	34
1. 상 황	34
2. 조치사항 및 절차	34
제2절 주 의	35
1. 상 황	35
2. 조치사항 및 절차	35
제3절 경 계	36
1. 상 황	36
2. 조치사항 및 절차	36
제4절 심 각	38
1. 상 황	38
2. 조치사항 및 절차	38
3.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40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도·농형 복합도시 “대설” 발생	41
1. 조치사항 및 절차	41
2.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44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45
가. 1차 보고	45
나. 2차 보고	45
다. 피해보고	46
라. 재난상황 보고서식	47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48
가. 재해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48

나. 보고체계	48
3.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	49
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49
나.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50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대설로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과 관련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법적근거

가. 작성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 「풍수해재난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 적용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구호법

다.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3절 적용범위

가. 대설 위기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의 대비/대응활동에 적용

나. 대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적용

제4절 위기형태

가. 대설로 인하여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나. 대설로 인한 농촌, 산간지역 학교의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학교시설물 붕괴 등 위험 발생

제5절 위기경보

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 빈발 시기 ○ 교과부 재해대책반 - 준비단계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교과부 재해대책반 I 단계 가동 - 근무인원 : 호우/태풍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교과부 재해대책반 II 단계 가동 - 근무인원 : 1명+필요 산하.소속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교과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근무인원 : 4명+전체 산하.소속기관 ※ 전체 산하.소속기관 비상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선포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대설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2.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가. 위기징후(대설) 파악

- 기상청 기상정보를 통해 기상정보 및 특보 수집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상강설량 또는 적설량 분석.파악
- 기상청(www.kma.go.kr), 방재기상정보시스템(metsky.kma.go.kr) 활용

나. 상황판단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주재)

- 총괄반에서 중앙재난종합상황실의 상황 판단 참고 및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대설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판단

다.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의 위기경보 발령 접수
- 대설관련 위기경보를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로 발령사항 전파
 - 위기경보 발령수준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요청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1. 위기대응 지침

가. 대설 위기징후 발생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자동 시행

나. 신속한 상황파악.전파 및 대설 진행상황 주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등

다. 대설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사전 대응조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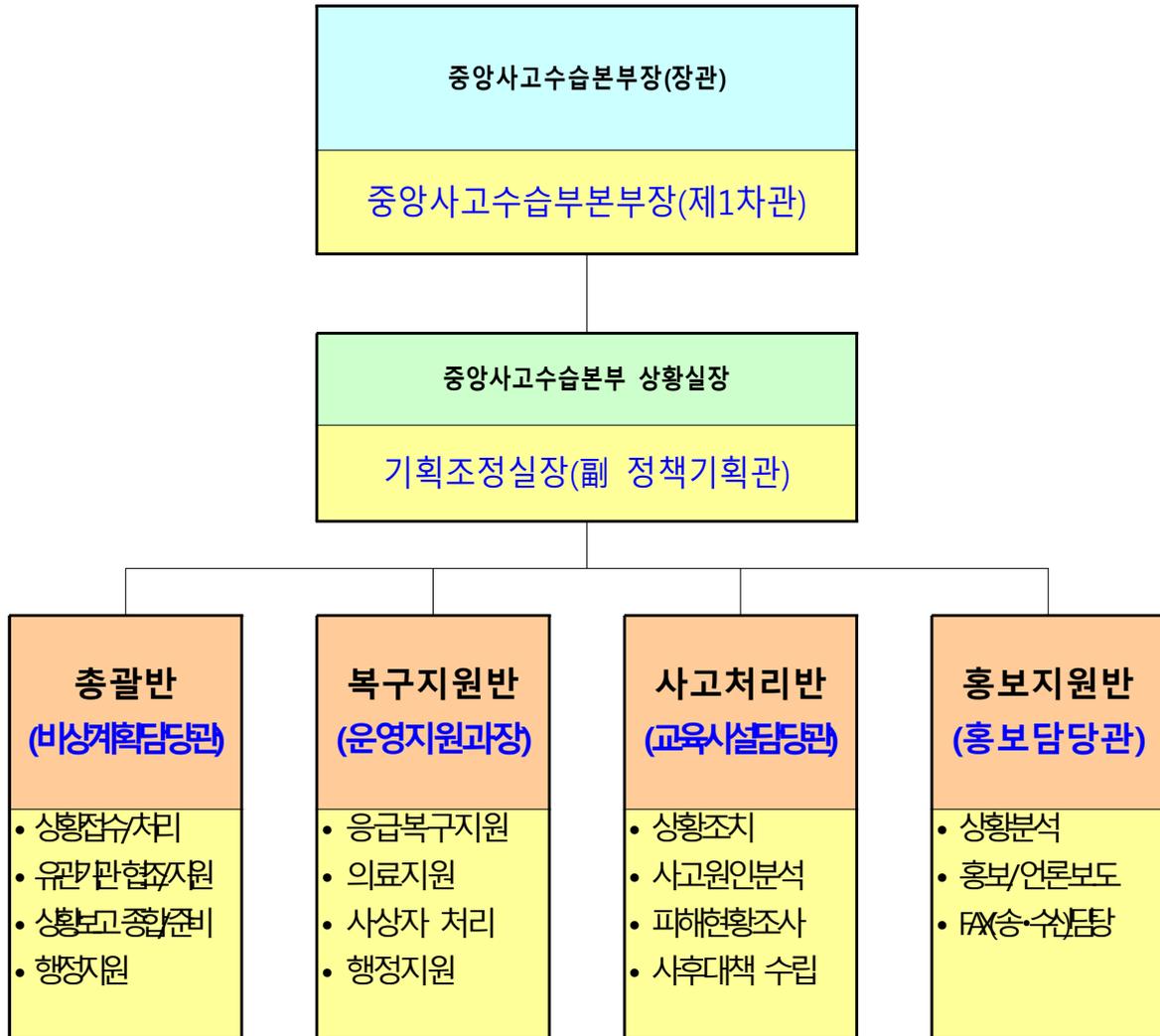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 추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및 협조체계 가동
- 학생 및 교직원 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조치

2. 위기대응 판단/고려요소

- 대설 예상 강설.적설량, 피해예정 범위.규모
- 대설 재난상황의 심각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 고립예상지역/도시교통 마비 예상지역의 학교 파악
- 필요 장비.인력 등의 확보 가능성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1.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수행 체계도



2. 부서별/기관별 임무역할

가. 교육과학기술부

- 대설 기상정보 및 진행상황 전파.보고
- 위기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상황대처 강화조치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대설 대비대책 강화 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 운영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예상지역 사전점검 및 출입통제 지시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
- 재해지역 학교에 대한 비상 수업대책 마련 및 시행

- 비상연락망 확인 및 장비.인력 대기조치 지시
- 학교시설물의 대설로 인한 산사태 및 고립시 대피준비 등 사전조치 지시
- 필요시 이재민 수용에 따른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수용 조치
- 신속한 응급복구 대응체제 구축여부 확인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 심(Blue)

1. 상 황

- 대설 빈발시기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사항

- 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용
 - 사전대비조치 지시 및 확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나. 조치 내용

(1) 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기상청 등의 자료(기습 폭설 등)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정보 확인
- 대설발생 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

(2)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용

□ 사전대비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지시 및 확인
 - 전자결재 공문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재해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일제점검 지시 및 점검결과 확인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지시 및 확인
 - 전자결재 공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일제점검 지시 및 점검결과 확인
 - 점검결과 작동상태가 불량하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체 조치 지시
- 각급 학교 학생수업 결손에 따른 응급수업대책 마련 지시 및 확인

(3)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대설로 인한 학교시설물 붕괴, 고립지역 학생 수업결손 방지 및 이재민 수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제2절 주 의 (Yellow)

1. 상 황

-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 재난상황 모니터링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 재해대책반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학생안전대책 점검 및 이행
-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점검

나. 조치 내용

(1)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재난상황 모니터링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대설재난 가능성, 심각성,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적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및 규모 등 대처계획을 논의
 - 소방방재청이 발령한 대설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에 전파
- (3) 재해대책반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비상근무명령 및 필요시 관련부서 차출 협조
 -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에 의거 1단계 운영
- (4)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5)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대설로 인한 학교시설물 붕괴, 고립지역 학생 수업결손 방지 및 이재민 수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 (6)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폭설로 인한 붕괴 위험시설 및 눈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제3절 경 계(Orange)

1. 상 황

-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때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목록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 재해대책반 운영(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폭설 수준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조정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 운영

나. 조치 내용

(1)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재난상황 모니터링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 총괄 반장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예.경보상황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전파, 유.무선 및 FAX를 활용한 2차 전파

(2)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대설재난 가능성, 심각성,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적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및 규모 등 대처계획을 논의
- 소방방재청이 발령한 대설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전파

(3) 재해대책반(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비상근무명령 및 필요시 관련부서 차출 협조
 -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에 의거 2단계 운영

(4)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토록 지시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5)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대설로 인한 학교시설물 붕괴, 고립지역 학생 수업결손 방지 및 이재민 수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 (6)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폭설로 인한 붕괴 위험시설 및 눈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7)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해당지역의 기상특보(대설)를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검토
- (8)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사전 점검.확인

제4절 심 각 (Red)

1. 상 황

-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이행
 - 폭설지역 학교 수업단축 및 휴교 시행 등 조치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 운영
-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 인접 학교시설 또는 임시시설 등 활용

나. 조치 내용

(1)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재난상황 모니터링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 총괄 반장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예.경보상황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전파, 유.무선 및 FAX를 활용한 2차 전파
- (2)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대설재난 가능성, 심각성,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적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및 규모 등 대처계획을 논의
 - 소방방재청이 발령한 대설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전파
- (3)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비상근무명령 및 필요시 관련부서 차출 협조
 -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에 의거 3단계 운영
- (4)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토록 지시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5)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대설로 인한 학교시설물 붕괴, 고립지역 학생 수업결손 방지 및 이재민 수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 (6) 학교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폭설로 인한 붕괴 위험시설 및 눈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7)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시행

- 해당지역의 기상특보(대설)를 고려하여 “심각단계” 발령시 최대한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 소방방재청의 “재난종합통보시스템”을 통해 방통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등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사항 등 방송 조치

(8)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점검.수용

3.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종합상황관리 및 재난상황 분석 판단
- 재난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응상황 파악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지원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복구지원반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처사항 확인
- 피해발생시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지시
- 피해우려지역 학교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사고처리반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보고체계 확인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에 따른 대처방안 지시
- 이재민 수용을 대비한 학교시설물 점검 및 확인 지시

□ 홍보지원반

- 재난상황별 학생 행동요령 및 응급 수업방안 홍보실시
- 이재민 발생시 학교시설물 수용방안 홍보실시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도.농형 복합도시 “대설” 발생

1.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목록

조치내용	비고
(1) 대설정보 확인.분석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참고하여 자체대책 논의 (3) 대설 상황 보고 및 전파 (4) 대설 위기경보 “경계” 발령 접수 및 전파 (5)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의 운영 (6)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및 비상근무 강화 지시 (7)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대처상황 확인 (8)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9) 학교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10) 학생,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확인 (11) 필요시 비상수업대책 수립 및 시행 지시	재해대책 반 및 중앙사고 수습본부

나. 조치내용

(1) 대설정보 확인.분석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재난발생상황 파악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참고하여 자체대책 논의

- 총괄반에서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대설로 인한 상황의

-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판단
- 지속적인 대설정보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
- (3) 대설 상황 보고 및 전파
 - 대설 상황보고서 작성
 - 대설재난 가능성, 심각성,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적설량 등을 분석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대처상황 파악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재난상황에 따른 대응조치 요청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 총괄 반장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예.경보상황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 통해 전파, 유.무선 및 FAX를 활용한 2차 전파
- (4) 대설 위기경보 "경계" 발령 접수 및 전파
 - 집중호우 관련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로 발령사항 전파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학교 시설물, 학생 보호조치, 휴교.휴업.단축수업, 학생 비상수업대책 및 이재민 수용시 준비 및 점검사항 등의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 요청 및 행동요령 전파
- (5)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사전조치 및 대응단계
 - 총괄반에서의 결정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시 추가 인원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영
- (6)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강화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강화지시
 - 대설상황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 발생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수시 보고토록 지시
- (7)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대처상황 확인
- (8)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대설로 인한 학교시설물 붕괴, 고립지역 학생 수업결손 방지 및 이재민 수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 (9) 학교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별 폭설로 인한 붕괴 위험시설 및 눈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건물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주변통제 등 조치지시(필요시 학생대피 실시)
- (10) 학생,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확인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한 피해상황 확인
 - 시·도교육청별로 발생한 피해상황 파악
 - 피해상황별 대처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이재민 수용 및 구호현황 파악
- (11) 필요시 비상수업.이재민 수용 대책 수립 및 시행 지시
 - 대설 및 기습 폭설로 인한 교육시설물 및 교통두절 등의 피해로 인하여 학교 휴교.휴업.단축수업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근 안전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지시
 - 등교가 불가할 경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e-Learning 학습방안 수립 및 시행
 - 해당지역의 기상특보(대설)를 고려하여 "심각단계" 발령시 최대한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 소방방재청의 "재난종합통보시스템"을 통해 방통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등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사항 등 방송 조치
 - 시.도교육청에서는 SMS문자,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사항 등을 통지
 -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고립지역 이재민 수용 및 응급 구호활동 시행 지시

2.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종합상황관리 및 재난상황 분석 판단
- 재난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응상황 파악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지원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응급 수업대책 수립, 학생안전대책 수립 이행

□ 복구지원반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처사항 확인
- 피해발생시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지시
- 피해우려지역 학교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사고처리반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조치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에 따른 대처방안 지시
- 학교시설물의 이재민 수용시 시설물 점검 및 수용

□ 홍보지원반

- 재난상황별 학생 행동요령 및 응급 수업방안 홍보실시
- 이재민 발생시 학교시설물 수용방안 홍보실시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가. 1차보고 : 대설 발생시

◆ 대설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 현재 00m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상황분석 : 현재 00mm의 적설량을 보이고, 기상청 예보에서 00m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됨
3. 피해예측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에 시설물 붕괴 우려 및 고립 등이 예상됨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재해대책반) 소집 및 피해상황 파악

나. 2차보고 : 대설 피해 발생시

◆ 대설피해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 현재 00m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상황분석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 피해 상황 파악
3. 피해상황 : 00시 및 인접 0개 시군의 학교에 시설물이 붕괴하고 고립지역 학생이 생겼으며 전력 및 통신이 두절된 상태임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소집 중이며, 피해지역의 학생 구조 실시 중

다. 피해보고 : 대설피해 발생시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소속기관]

구 분	학교명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00%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활동 현황 ○ 학생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요청 사항
경미 피해	00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00%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라. 재난상황 보고 서식

재난상황 보고

기관명 : (직인)

1. 재난개요

- 가. 재난원인 :
- 나. 재난기간 :
- 다. 재난지역 :

2. 피해상황

- 가. 인명피해 :
- 나. 시설피해

기관명	행구영 정명	학교 급별	설립 구분	학교명	피해내용					복구대책	
					시설명	구조	피해 정도	피해량	피해액	복구 소요액	복구 계획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다. 수업대책 :

라. 기타 특이사항 : 학교 휴교조치, 학생 응급복구 동원 등

2. 교육과학기술부 비상연락망

가. 재난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 교육과학기술부(본부)

구분	부서명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FAX	실무자 H.P
		과장	사무관	실무자			
교육과학	비상계획담당관실	노병석	김창환	이정훈	(02)2100-6189	(02)2100-6193	018-232-8356
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조일환	이승재	조두행	(02)2100-6301	(02)2100-6305	010-9780-2010

나. 보고 체계

- 시.도교육청.대학 등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 각급 기관에서는 동 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재난 발생 시 비상계획담당관실, 교육시설담당관, 사립대학지원과, 전문대학정책과에 보고

부서명	소관업무	연락처
비상계획담당관실	- 위기관리 업무 총괄	T:(02)2100-6190 ~ 2, F:(02)2100-6193
교육시설담당관	- 재난관리 업무 총괄	T:(02)2100-6300 ~ 4, F:(02)2100-6305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대학 재난관리	T:(02)2100-6930~4, F:(02)2100-6935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전문대 재난관리	T:(02)2100-6401~4, F:(02)2100-6405

- .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사립대학에서는 재난발생시 위의 부서로 즉시 재난상황발생 보고

3.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기준
 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단계 : 준비체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준 : 「대설 주의보」 발령 시 ○ 근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 00 ~ 18 : 00 (교육시설담당관) - 18 : 00 ~ 24 : 00 (당직자가 겸임) 	재해대책반
2단계 : 경계체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준 : 「일부지역 대설 경보」 발령 시 ○ 근무대상 - 교육시설담당관 직원 1명(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9 : 00 ~ 24 : 00(해제시 까지) 	재해대책반
3단계 : 비상체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준 : 전국 대규모 재해 발생시 ○ 근무대상 : 4명(아래 각과 1명씩 교대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획담당관실 직원 1명(교대 근무) - 교육시설담당관 직원 1명(교대 근무) - 사립대학지원과 직원 1명(교대 근무) - 전문대학정책과 직원 1명(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9 : 00 ~ 익일 09 : 00까지 	중앙사고 수습본부

※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구 분	임무 및 근무요령
1단계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상황근무내용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기상특보 전파 ○ 산하기관 상황근무 및 사전재해 예방조치 지시, 확인 및 대처요령 전파.지시
2.3단계 (경계. 심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상황 파악 집계 및 보고서 작성 ○ 긴급대처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지시 ○ 기타 재해상황 전반을 관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체계 : 담당자→과장→실.국장→차관→장관 ※ 긴급상황시 : 담당자 → 장관, 차관, 실.국장에게 즉시 보고 [긴급상황 전파(2개의 트랙)] ① 교과부 정책기획관→교과부 당직실→시.도교육청 당직실 ② 교과부 정책기획관→학교지원국장→시.도교육청 부교육감 ○ 근무지 : 해당부서 사무실 ○ 비상근무체제로 변경시 전일 근무조의 다음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 근무교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 08:30 ~ 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 휴일 : 09:00~18:00,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 ※ 08:0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 ○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지진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및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지진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1
제2절 법적근거	1
제3절 적용범위	1
제4절 위기형태	1
제5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
1. 위기대응 지침	1
2. 판단/고려 요소	2
제6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3
1. 업무수행 체계도	3
2. 위기관리 대응기구	4

제2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인구밀집지역 강진 발생	5
1. 조치목록	5
2. 조치내용	5
가. 지진상황 파악 및 전파	5
나.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7
다. 긴급 대응조치	8
라. 응급 복구활동	10
3.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10
가. 교육과학기술부	10
제2절 지진 해일 발생	11
1. 조치목록	12
2. 조치내용	12
가. 지진 해일 상황 파악 및 전파	12

나. 긴급초동 조치	13
다.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15
라. 긴급대응조치	16
마. 응급 복구활동	17
바.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17
(1) 교육과학기술부	17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19
가. 1차 보고	19
나. 2차 보고	19
다. 피해보고	20
라. 재난상황 보고양식	21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22
가. 재난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22
나. 보고체계	22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과 유관기관의 임무.역할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법적근거

가. 작성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 적용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지진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다.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3절 적용범위

- 가. 지진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유관기관의 대비/대응 활동에 적용
- 나. 지진 또는 지진해일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에 적용

제4절 위기형태

- 가. 강진 발생으로 대규모 학생 및 학교시설물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나. 지진해일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되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발생

제5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 위기대응 지침

가. 대응 개념

- 목표 : 피해 범위/규모 등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 조치
- 대응 방향
 - 초기 관련정보 부재를 고려한 대응절차 자동 시행
 - 신속한 지진 상황 전파 :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등
 -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의사결정
 - 신속한 긴급 대응 조치 : 학생 긴급대피, 등·하교 안전 및 휴교(휴업) 조치, 위험지역 통제, 긴급구호활동 및 긴급지원체계 가동, 수업재개 조치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실시

나. 대응 지침

- 지진발생에 따른 가용수단을 동원한 피해 상황 파악 및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유관기관 간 통신 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각 실무반 조속한 구성 및 가동
 - 피해 범위 및 규모의 신속한 파악과 집계
- 2차 피해 방지 및 긴급 구조/구급 주력
 - 강진 발생 후 화재 및 폭발 등 2차 피해 유발 요소에 대한 점검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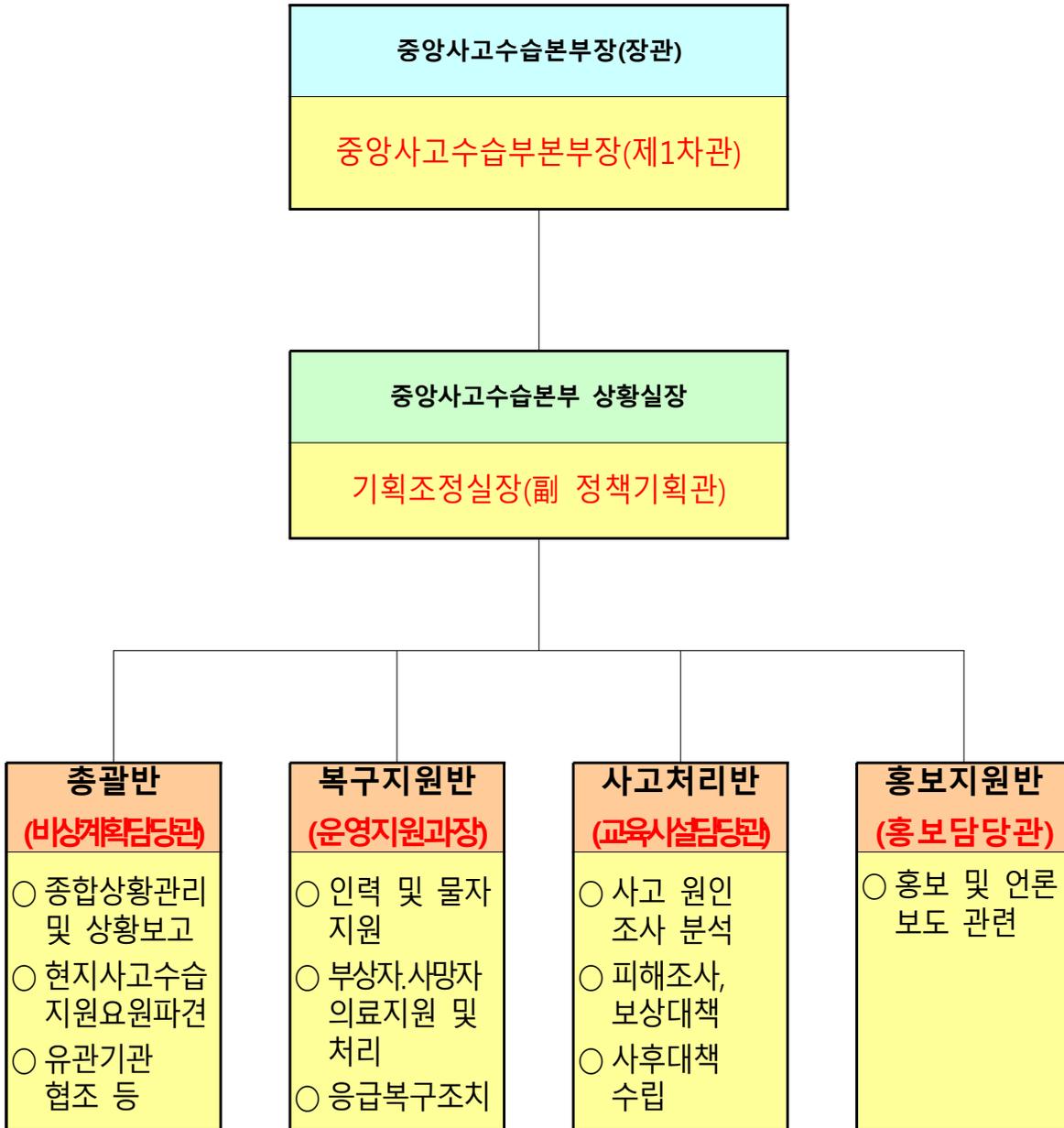
2. 판단/고려 요소

- 지진 발생 후 재난 대응시 여진 및 2차 피해 방지를 고려
 - 본진으로 인해 손상된 학교시설물 및 구조물의 여진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의 진입 방지
 - 지진으로 파손된 전기, 가스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재 공급시 안전성을 고려한 공급 방안 마련
- 지진해일 도달 시간 및 내습 범위를 고려한 학생 및 교직원 대비
 - 지진해일 도달 시간 내 학생 및 교직원 대피를 위한 대피경로 확보 및 유기적 상황전파와 대비 주력

- 지진해일 내습 예상 범위를 고려한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
- 지진해일 내습 시 등.하교 안전 및 휴교(휴업)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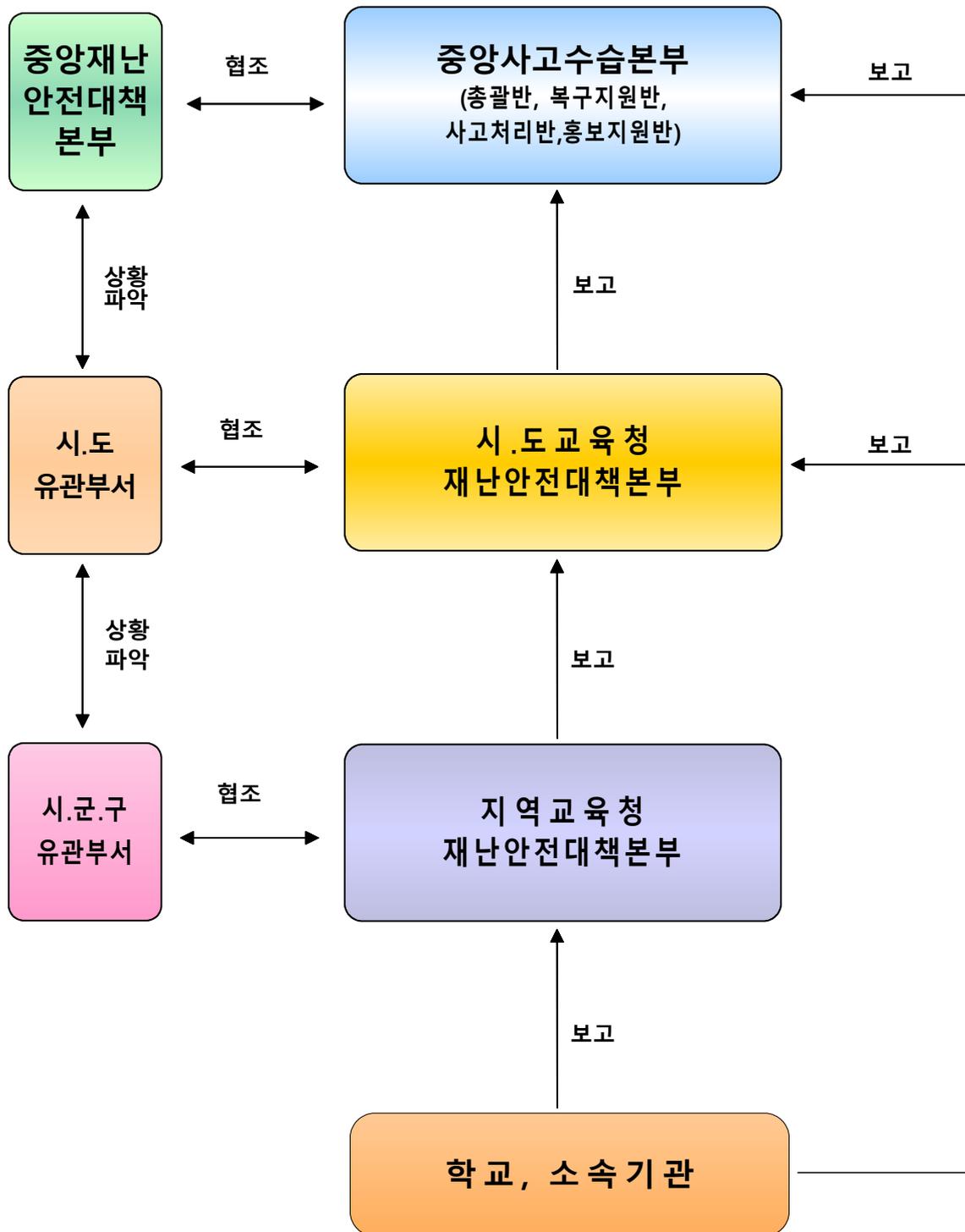
제6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 업무수행 체계도



※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반장은 과장급으로 편성하며, 홍보지원반은 홍보 담당관실에서 담당

2. 위기관리 대응기구



제2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인구밀집지역 강진 발생

1.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지진상황 파악.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발생 정보의 접수 ○ 지진 상황의 보고 및 전파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초기 상황 판단 회의
대응조직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지역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확인 및 통신확인
긴급대응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확인 및 지원 ○ 2차 재난방지대책 강구 지시 및 확인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응 급 복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학교 지원 대책 수립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2. 조치 내용

가. 지진상황 파악 및 전파

- 지진발생 정보의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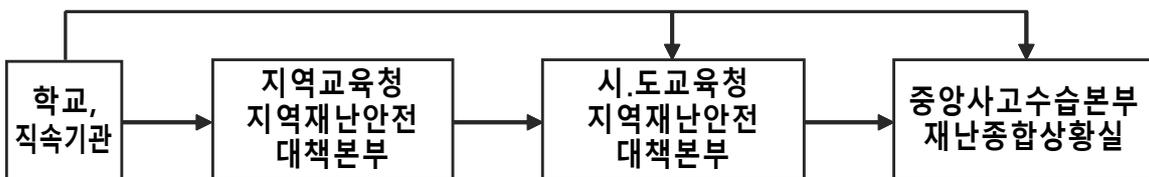
- 기상청의 지진 발생 사실 통보 절차 확인 및 연결
- 기상청에서 FAX, SMS, 핫라인, 웹사이트 등의 주기적 확인
- 기상청과의 관련통신 수단의 주기적 점검

□ 지진상황의 보고 및 전파

- 1차 보고
 - 총괄반장 : 본부장(장관), 차관, 부 본부(실,국장)
 - 총괄반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직속기관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전파
 - 유.무선 및 FAX 등을 통한 2차 전파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재난 상황 신속 전파 지시 및 실행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발생 초기 해당 지역별로 피해 상황 파악의 심각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보고 체계



- 2차 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긴급지원 필요 여부 보고
-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피해 심각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상황의 집계
- 피해지역 통신 두절시 소방방재청, 경찰청, 국방부에 피해지역의 정보제공 요청
- 초기 상황 판단 회의 준비 및 보고

- 피해 극심 지역 파악 또는 예측
- 초기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 회의 준비 내용

위기상황	지진발생	발생일시	2010.10.18 10:00
발생위치	○○시	발생규모	리히터 규모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극심 지역(예측지역) ○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 내)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필요 ○ 지휘체계 보고 현황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전파 현황 			

□ 초기 상황 판단회의

- 회의주재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 부재시 : 부분부장 > 총괄반장 > 복구지원반장
- 참석자(부재시 차선임자)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회의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전 초기 상황판단회의
 - 피해 극심 지역 또는 예측 지역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 내)
 - 피해현황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기타 조치 사항
- 회의 결과 실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판단회의 준비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나.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비상단계 체계 가동
 - 수습본부에는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으로 나누어 임무수행 - 상황판단회의 개최

- . 본부장, 부분부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참석 - 재난상황대처 지시
-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재난현장 파견
- .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 재난상황 보고
-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 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 본부장에게 보고
- . 사전조치사항, 피해상황, 응급조치사항, 최종피해상황 등
-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등을 이용
- 기타 임무
 - .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 수 및 신원파악
 - . 학교시설물 피해 현황 및 복구활동

□ 지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시·도교육청 상황실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종합상황실에 시·도교육청 상황실 구성·운영 현황 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의 통신(유.무선, FAX)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 [통신두절시] HAM동우회, 소방·경찰 무선망 활용한 통신 유지

다. 긴급대응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가동
 -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구성
 - 실무반의 운영
 - 상황판단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 계획서

□회의개요

- 일 시 : 2010. 10. 18 00:00
- 장 소 :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1617호)
- 참석대상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회의내용
 - 대규모 강진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관련 사항 등 논의
- 지시 및 협조요청 사항
 - 기관별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 신속한 피해내용 파악 및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복구
 - 유관기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조 요청
- 피해집계 현황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응급조치 확인 및 지원
 - 지진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학교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 학교 및 구호품의 확보
 - 2차 피해 우려 지역내 학생에 대한 대피명령 및 등.학교 안전 확보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 위험구역 내 학생의 강제대피
 - 지역 경찰서의 장애물 통행제한 요청
 -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 진화, 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2차 재난 방지대책 강구 지시 및 확인

- 2차 피해 예방 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 여진에 의한 학교시설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위험물 취급시설 등의 방재활동 확인 지시 및 확인
-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지시 및 확인
 - 교육시설물 내 공급되는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요청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상황실에 전기, 가스 공급 차단의 필요성 파악 및 공급 차단 요청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생 수용.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계획 실행
 - 유관부처의 협조를 통하여 긴급 지원 실행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지진 재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 인명구조 및 학생.교직원, 이재민 수용.구호
 - 학교시설물 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

라. 응급 복구활동

-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 피해상황, 지역특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 지진 발생시 기관장이 판단하여 학생들의 조기 귀가, 임시 휴교(휴업) 조치
 - 기관장은 재난진행상황 전달 및 재난정보교환 등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 교육시설물의 피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한 인근학교의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3.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지진 발생 초기 상황 파악 및 보고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해 피해상황 파악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한 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지진발생 정보의 접수 및 관리
 - 지진상황의 지휘체계 보고
 - 지진상황의 소속기관 전파
 - 지역재난대책본부의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준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개최 및 결과 정리/보고
 -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제 등
- 복구지원반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처사항 확인
 - 피해발생시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지시
 - 피해우려지역 학교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확인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사고처리반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상황 보고체계 확인
 - 학생 및 학교시설물 피해에 따른 대처방안 지시
 - 이재민 수용을 대비한 학교시설물 점검 및 확인 지시
- 홍보지원반
- 홍보 및 언론보도 관련 지원
 - 이재민 발생시 학교시설물 수용방안 홍보실시

제2절 지진 해일 발생

1.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지진해일상황 파악.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해일 발생 정보의 접수 ○ 지진해일 상황의 보고 및 전파
긴급초동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저지대 인접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 및 응급 조치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초기 상황 판단 회의
대응조직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지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확인 및 통신확인
긴급대응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반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확인 및 지원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응 급 복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학교 지원 대책 수립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2. 조치내용

가. 지진해일 상황 파악 및 전파

□ 지진해일 발생 정보의 접수

- 기상청의 지진해일 발생 사실 통보 절차 확인 및 연결
 - ※ 지진해일 특보 발표기준 <지진업무지침 : 기상청>
 -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예상파고가 0.5m이상일 때

-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예상파고가 1.0m이상일 때

- 기상청에서 FAX, SMS, 핫라인, 웹사이트 등의 주기적 확인

□ 지진해일 상황의 보고 및 전파

- 1차 보고

- 총괄반장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전파
- 유·무선 및 FAX를 통한 2차 전파

- 유관기관 전파 : 총괄반 요원

- 유관기관 상황실 유선, Fax 등으로 상황 전파

나. 긴급초동 조치

□ 해안 저지대 인접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 및 응급조치

-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지진해일 상황 신속 전파

지시 및 실행 확인

-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행동사항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 해안 저지대 인접 학교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 위험

지역 학생 및 교직원 대피 실시 지시 및 전파

- 유관기관 긴급 대피 및 응급조치 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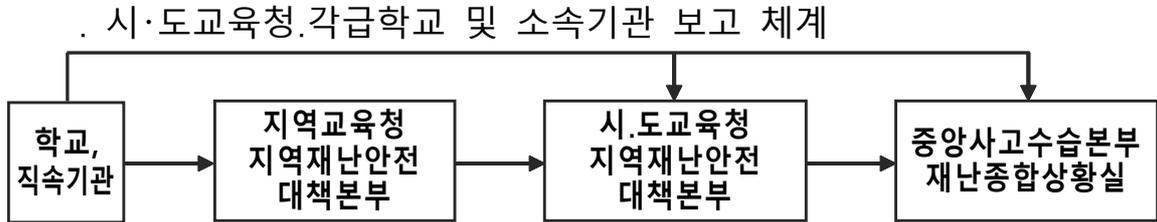
-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에 따른 통행로 확보
- 학생 및 교직원 보호대책 마련
- 학부모 연락체계 수립 및 확인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지역재난종합상황실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지역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해일발생 초기 해당 지역별로 피해 상황 파악의 심각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 2차 보고
 - 지역재난종합상황실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긴급지원 필요 여부 보고
-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피해 심각 지역의 지역재난종합상황실과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상황의 집계
- 피해지역 통신 두절시 소방방재청, 경찰청, 국방부에 피해지역의 정보제공 요청
- 초기 상황 판단 회의 준비 및 보고
 - 피해 극심 지역 파악 또는 예측
 - 초기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 회의 준비 내용

위기상황	지진해일발생	발생일시	2010.10.19 10:00
발생위치	oo항	발생규모	2~4m 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극심 지역(예측지역) ○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내)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필요 ○ 지휘체계 보고 현황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전파 현황 			

□ 초기 상황판단회의

- 회의주재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 부재시 : 본부장 > 총괄반장 > 복구지원반장
- 참석자(부재시 차선임자)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 회의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전 초기 상황판단회의
 - 피해 극심 지역 또는 예측 지역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 내)
- 피해현황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기타 조치 사항

○ 회의 결과 실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판단회의 준비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다.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비상단계 체계 가동
 - . 수습본부에는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으로 나누어 임무수행
- 상황판단회의 개최
 - . 본부장, 차관, 부분부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참석
- 재난상황대처 지시
 -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재난현장 파견
 - .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 재난상황 보고
 -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 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 본부장에게 보고
 - . 사전조치사항, 피해상황, 응급조치사항, 최종 피해상황 등
 -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 등을 이용
- 기타 임무
 - .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 수 및 신원파악
 - . 학교시설물 피해 현황 및 복구활동

□ 지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시.도교육청 상황실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종합상황실에 시.도교육청 상황실 구성.운영 현황 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의 통신 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의 통신(유.무선, FAX)상태 확인
- [통신두절시] HAM동우회, 소방.경찰 무선망을 활용한 통신 유지

라. 긴급대응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가동

-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구성
- 실무반의 운영
- 상황판단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 계획서

□ 회의개요

- 일 시 : 0000. 10. 19 00:00
- 장 소 :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1617호)
- 참석대상 : 본부장(장관), 차관, 부분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회의내용
 - 대규모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관련 사항 등 논의
- 지시 및 협조요청사항
 - 기관별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 신속한 피해내용 파악 및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복구
 - 유관기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조 요청
- 피해집계 현황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응급조치 확인 및 지원
 - 지진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학교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 학교 및 구호품의 확보
 - 2차 피해 우려 지역내 학생에 대한 대피명령 및 등.하교 안전 확보
 - 지역 경찰서의 장애물 통행제한 요청
 -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 진화, 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생 수용.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계획 실행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지진해일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 인명구조 및 학생.교직원, 이재민 수용.구호
 - 학교시설물 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

마. 응급 복구활동

□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 피해상황, 지역특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 지진 발생시 기관장이 판단하여 학생들의 조기 귀가, 임시 휴교(휴업) 조치
- 기관장은 재난상황 전달 및 재난정보교환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지대로 이동 후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 교육시설물의 피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한 인근 학교의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바.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1)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지진 해일 발생 초기 상황 파악 및 보고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해 피해상황 파악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한 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지진해일발생 정보의 접수 및 관리
- 지진해일상황의 지휘체계 보고
- 지진해일상황의 소속기관 전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준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개최 및 결과 정리/보고
-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등
- 복구지원반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처사항 확인
 - 피해발생시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지시
 - 피해우려지역 학교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사고처리반
 - 시·도교육청.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재난 대처사항 확인
 - 피해발생시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지시
 - 피해우려지역 학교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홍보지원반
 - 홍보 및 언론보도 관련 지원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가. 1차 보고 : 지진규모 6.0이상 발생시

◆ 지진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00분 00지역에 규모 0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 상황분석 : 국내 최초 대규모 강진 발생
3. 피해예측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에 대규모 붕괴 및 화재발생 등이 예상됨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집 및 피해상황 파악

나. 2차 보고 : 지진규모 6.0이상 발생시

◆ 지진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00분 00지역에 규모 0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 상황분석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 피해 상황 파악
3. 피해상황 : 00시 및 인접 5개 시군의 학교 시설물이 붕괴 및 화재 발생되고 전력 및 통신이 두절된 상태임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소집 중이며, 피해지역의 학생 구조 실시중

다. 피해보고 : 지진규모 6.0이상 발생시

[○ ○시·도교육청 및 국.공.사립 각급대학(교), 직속기관]

구 분	학교명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00%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활동 현황 ○ 학생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요청 사항
경미 피해	00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00%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라. 재난상황 보고 양식

재난상황 보고

기관명 : (직인)

1. 재난개요

가. 재난원인 :

나. 재난기간 :

다. 재난지역 :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나. 시설피해

기관명	행구 영역명	학교 급별	설립 구분	학교명	피해내용					복구대책	
					시설명	구조	피해 정도	피해량	피해액	복구 소요액	복구 계획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다. 수업대책 :

라. 기타 특이사항 : 학교 휴교조치, 학생 응급복구 동원 등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가. 재난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 교육과학기술부(본부)

구분	부서명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FAX	실무자 H.P
		과장	사무관	실무자			
교육과학	비상계획담당관실	노병석	김창환	이정훈	(02)2100-6189	(02)2100-6193	018-232-8356
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조일환	이승재	조두행	(02)2100-6301	(02)2100-6305	010-9780-2010

나. 보고 체계

- 시.도교육청.대학 등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각급 기관에서는 동 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재난 발생 시 비상계획담당관실, 교육시설담당관, 사립대학지원과, 전문대학정책과에 보고

부서명	소관업무	연락처
비상계획담당관실	- 위기관리 업무 총괄	T:(02)2100-6190 ~ 2, F:(02)2100-6193
교육시설담당관	- 재난관리 업무 총괄	T:(02)2100-6300 ~ 4, F:(02)2100-6305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대학 재난관리	T:(02)2100-6930~4, F:(02)2100-6935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전문대 재난관리	T:(02)2100-6401~4, F:(02)2100-6405

- .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사립대학에서는 재난발생시 위의 부서로 즉시 재난상황발생 보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교육시설에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세부적인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관련 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1
제2절 적용 범위	1
제3절 관련 법규	1
제4절 용어 정의	2
제5절 위기 형태	4
제6절 전개 양상	5
제7절 위기 경보	6
제8절 위기대응 지침	7
제9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7

제2장 위기전개 수준별 조치계획

제1절 대비단계	11
1. 상황	11
2. 조치 목록	11
3. 조치 내용	12
제2절 대응단계	12
1. 상황	12
2. 조치 목록	13
3. 조치 내용	13

붙임

1. 보도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6
2. 피해상황 분석 편람	17
3. 최초보고서	18
4. 중간보고서	19
5. 최종보고서	20

제1장 개요

제1절 목적

이 매뉴얼은 다중밀집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사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 및 관련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적용범위

- 가. 교육시설 화재의 대비.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
- 나. 다중밀집시설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대규모 재난상황에 적용

<다중밀집시설의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가 밀집·수용된 시설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 ※ 규정하는 다중밀집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 매뉴얼 준용

제3절 관련 법규

- 가. 재난 및 위기관리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나. 소방·방화 및 안전관리

- (1) 소방기본법
-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소방시설공사업법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건축법
-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8) 의무소방대설치법
- (9) 위험물안전관리법
- (10) 주택법
- (1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 (1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 규칙(소방방재청)

제4절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주관기관	해당 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해당 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기관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위기관리 활동	①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구 분	내 용
	<p>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p> <p>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p> <p>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p>
위 기 경 보 수 준	<p>① 관심(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p> <p>② 주의(Yellow)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p> <p>③ 경계(Orange)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p> <p>④ 심각(Red)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p>
다중밀집시설	<p>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p> <p>-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p>
다중이용업	<p>「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p> <p>-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바닥면적 100㎡이상),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 찜질방·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등</p> <p>-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p>
화재경계지구	<p>소방기본법에 의해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p> <p>-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p>

제5절 위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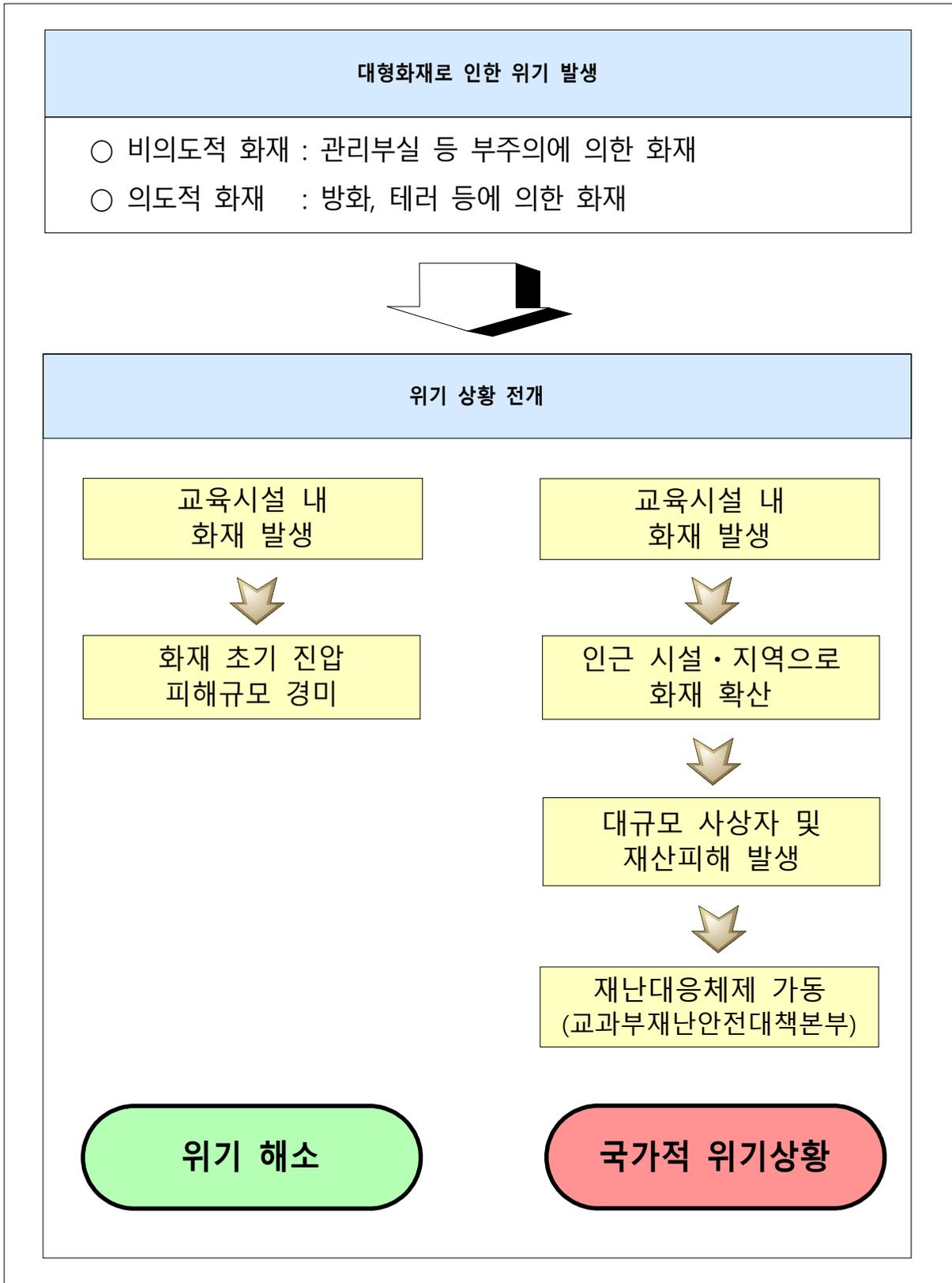
가. 위기발생 원인

- 의도적 원인 : 방화, 테러 등에 의한 화재
- 비의도적 원인 :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
 - 전기, 담배, 가스, 불티, 유류, 불량난, 난로 등
 - 초.중등학교에서의 실험부주의에 의한 화재
 - 대학내 연구소 등 실험부주의에 의한 화재

나. 시설·기능·유형별 위기 유형

- 초.중.고 교육시설의 화재
- 초.중.고 운동부 합숙소 및 기숙시설의 화재
- 대학 내의 교사시설 및 기숙사시설의 화재
- 사설학원,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기숙학원 시설의 화재
- 국립대학병원시설의 화재

제6절 전개양상



제7절 위기경보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 기준	비 고
관 심 (BLUE)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의 이상기상 예보 또는 특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경보 발령으로 화재특별 경계활동 강화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화재가 빈발 ○ 취약시기 다중밀집시설의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 ○ 사회불만자 등에 의한 다중밀집시설 방화 급증 	징후활동 감시 (대비업무 수행)
주 의 (Yellow)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밀집시설 초기화재 발생 신고 ○ 불특정 다수인이 건물내부에 있으며, 인명·재산피해 예측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현장지휘대의 초기현장 대응 ○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전개 	협조체제 가동 (일상적 화재)
경 계 (Orange)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밀집시설 화재 연소 확산 ○ 건물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사 다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5명, 부상 10명 이상의 피해 우려상황 전개 → 1개 소방서로 대응 불가하여 광역 응원출동 요청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대비계획 점검 (대형화재 로 연소 확대)
심 각 (Red)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밀집시설 화재로 급격히 연소 확산 ○ 건물내부에 다수인이 피난하지 못하여,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국가적 위기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즉각 대응태세 돌입 (대형화재 국가위기 상황 발생)

나. 위기경보 절차

- (1) 주관기관(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발생으로 인한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위기 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
- (2) 위기평가지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

- 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 시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 (4) 주관기관(실무기관)은 위기수준 평가결과와 상황분석·평가, 대응방향·목표, 대응조치·수단, 유관기관의 역할 및 협조사항, 대국민홍보, 시행시기 등을 포함하여 대응책 강구
 - (5) 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국정운영기조,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책을 최종 확정
 - (6) 주관기관은 경보발령 사항과 각종상황을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재난대책과) 및 유관기관에 전파
 - * 주관기관은 경보발령에 따른 각종상황도 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재난대책과)로 신속하게 전파

제8절 위기대응 지침

- 목표 : 신속한 사태 수습/조치, 피해 확산 방지
- 대응방향

- 교육시설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강화
- 유관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위기로의 발전 차단
- 2차 피해 확산방지조치 및 긴급복구활동 지원

- 대응지침
 - 효과적인 예방활동 및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 신속한 재난 상황접수.보고체제 확립
 - 현장 위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기 대응체제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 및 산하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협조.지원체계 구축
 - 2차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활동 실시
 - 효과적인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제9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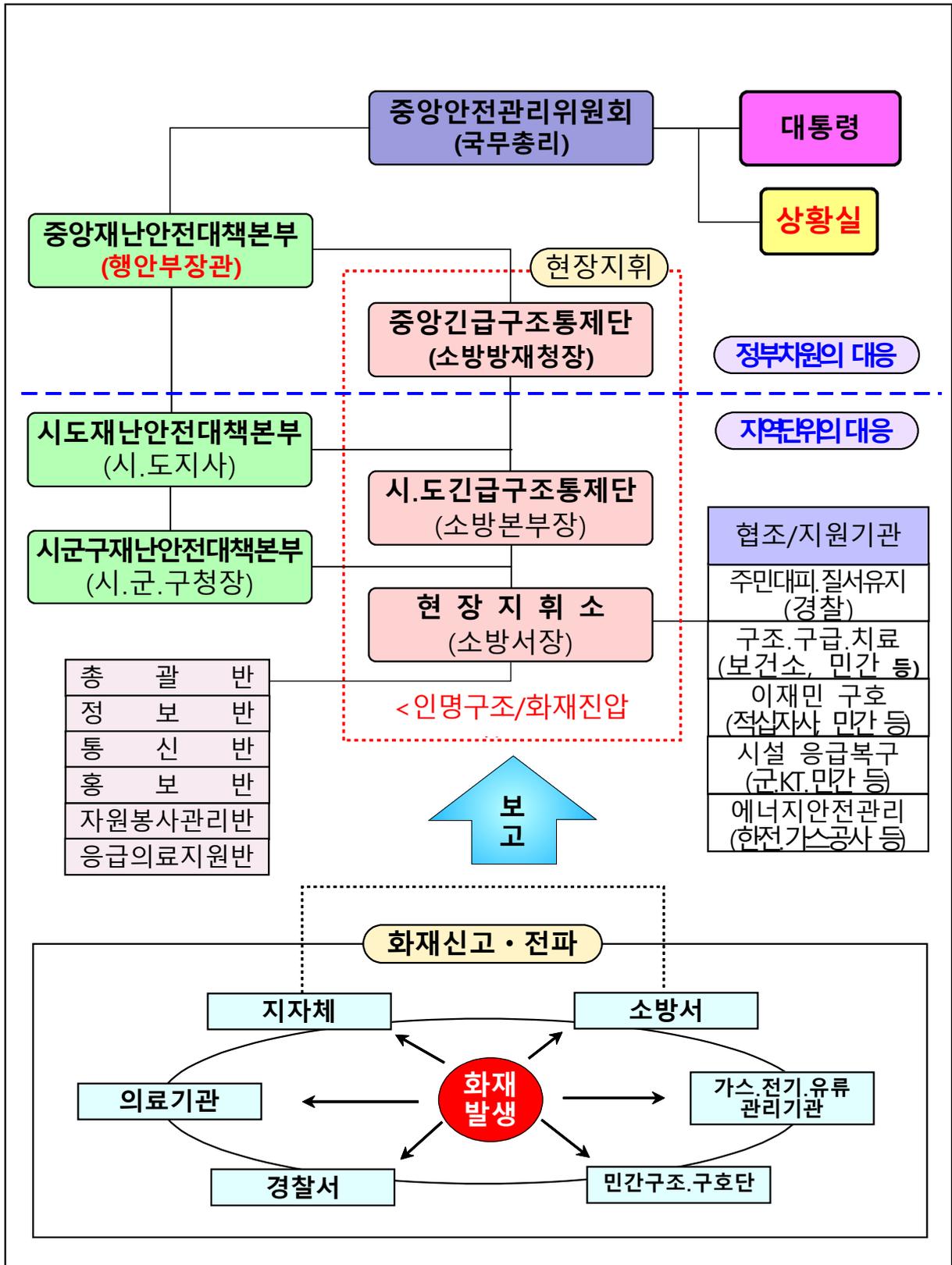
1.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임무

- 복구 및 피해 보상대책 수립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조기수습 및 2차 피해 최소화
- 유사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추진

2. 정부 종합체계도



3. 정부 위기관리기구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 역할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 · 운영 ○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 조정 - 중앙행정기관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협의 · 조정 - 재난사태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및 협조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징후 목록 작성 · 운영 - 국가위기상황센터에 징후목록 관리현황 제공 ○ 소관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위기상황센터에 신속하게 전파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할지역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수습·복구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강구 - 지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 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 진압 및 긴급구조활동 지휘 · 통제 - 진압 및 긴급구조 ·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지역긴급구조 통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 · 조정 - 진압 및 긴급구조 · 지원기관 지휘 · 통제

제2장 위기전개 수준별 조치계획

제1절 대비단계

1. 상 황

구 분	내 용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의 이상기상 예보 또는 특보 발령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화재가 빈발 ○ 취약시기 다중밀집시설의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 ○ 사회불만자 등에 의한 다중밀집시설 방화 급증

2.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 대비태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보고체계 확립 ○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 소방대상물 긴급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 사고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추진 실태 확인 ○ 대국민 안전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 홍보팀
○ 비상대비태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연락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관리체계 점검 ○ 당직근무 철저 및 순찰강화 ○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 유관기관

3. 조치 내용

가. 대비태세 강화

- 비상연락망 점검(비상소집훈련 실시)
- 상황보고체계 확립
- 취약시기 강조기간 사고예방활동 강화 지시 및 비상특별경계근무 실시
- 전기.가스사고 대응체계 및 절차에 대한 연습/훈련 실시
- 소방대상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나. 사고예방 활동 강화

- 법정검사,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취약시기.대상별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 전기.가스 안전사용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 추진
-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의 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 확인 점검

다. 비상대비태세 유지

- 상황관리체계 등 상시대비체계 점검.정비
 - 비상소집 훈련 및 비상연락망 확인
- 긴급구조 대응체계 및 절차에 대한 연습/훈련 실시
 - 비상상황관리체계 점검
-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마련

제2절 대응단계

1. 상 황

구 분	내 용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에 대한 초기화재 발생 신고 ○ 인명.재산피해 예측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소화 및 인근 소방서출동, 초기 대응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전개

2.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 화재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상황(6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인적사항, 화재 상황 ○ 화재상황 보고서 작성(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상황실(119)
○ 초기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유형에 따라 자체소화전 및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압 ○ 현장상황 모니터링 지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신고 후 자체장비 초기진압(당직자)
○ 상황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유형별 관련 유관기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 화재상황 보고서 작성(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 상황보고
○ 현장활동지원(초동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서 현장지휘대 지휘 ○ 피해영향 평가 및 사고원인 조사.분석 ○ 상황보고서 (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대 (소방관서) ○ 당해기관
○ 화재규모에 따른 상황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 상황종료 및 복구 ○ 대규모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대 (소방관서)

3. 조치 내용

가. 화재 신고

○ 화재 신고

- 목격자, 당직자, 관할소방서 상황실(119)에 화재발생 신고

○ 상황 보고

- 1차 상황 보고 : 초기화재 발생 상황 보고
- 상황 보고요령

- 보고방법 : 최초 사고발생 인지 즉시 내부보고와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선 보고



■ 평일

⇒ 비상계획담당관실(02) 2100-6190 ~ 2(Fax: 02-2100-6193)

⇒ **교육시설담당관실**(02) 2100-6301 ~ 4(Fax: 02-2100-6305)

- 야간.공휴일 : 당직실(02)2100-2118, 2119, 3114 유선 보고

○ 상황 전파

- 전파자 : 교육과학기술부 총괄반

- 전파대상 : 중앙안전대책본부, 총리상황실, 국정상황실, 국정원, 중앙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 전파방법 : 유선, Fax 등으로 상황 전파 후 서면 통보
- 보고서식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보고(붙임 3양식)

나. 초기진압

- 화재유형에 따라 자체소화전 및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압
 - 자체 보유 소화기 및 소화기구 등으로 초기진압
- 현장 상황 모니터링 지속 통보
 - 피해 상황 및 지원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

다. 상황보고 및 전파

- 화재상황보고서(중간) 작성 및 보고
 - 화재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최초보고서 작성
- 화재유형별 관련 유관기관 통보
 - 가스.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자 협조 지원

○ 처리상황 보고 및 전파

- 보고 및 전파자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과, 산하 재난관리기관
- 처리상황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과 및 산하 재난관리기관
 - 특정지역에 산발적으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개요를 즉시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때에는 피해 물량만 우선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재난관리기관은 피해 심각지역 및 피해현황을 분석하여 보고

구 분	학 교 명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경미 피해	00시 학교	○ 시설 00% 피해	긴급복구 현황	
심각 피해	00시 학교	○ 시설 00% 피해 ⇒ 2차 피해 현황 ○ 주요기능 상실 여부	긴급복구 현황	지원요청사항

- 상황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라. 현장 활동 지원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검색활동 지원
 - 소방관서 현장지휘대 지원
 - ※ 복구순위
 - 제1순위 : 교사시설 등 필수시설
 - 제2순위 : 이재민수용시설 등 주요시설
 - 제3순위 : 주거시설, 일반산업시설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임시 전력 및 가스공급 지원 요청
 - 복구활동 확대에 따른 인원.장비.물자 추가투입 및 복구활성화
- 피해영향 평가 및 사고원인 조사.분석

- 피해영향 및 사고 원인 조사.분석, 국과수 화재감식반 협조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 복구대책 수립
- 상황보고서 작성(최종)
 - 화재규모에 따른 상황전개 보고(소규모 경우 종료)

부 록

붙임 # 1

《보도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보 도 자 료	작성과	
	2010년 0월 0일	담당자	
		연락처	

□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사상자

- 사망자, 부상자의 수
- 사상자 발생 원인
-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항(각 사망자별 시체안치소)
- 부상자의 부상정도 및 수용 병원

2. 재산피해

- 추정 손실액
- 추가적으로 위험상태에 있는 재산

3. 발생원인

- 목격자의 설명과 선착대원의 초기상황 설명
- 화재상황이 발견된 경로/방법
- 최초 신고자

4. 인명구조 활동

- 활동에 참여한 대원의 수
- 현장에 있는 지휘관 또는 유명인사
- 사용된 장비
-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화재 연소확대 방지 조치

5. 기타 복구상황에 관한 정보

6. 전화번호

- 실종자정보, 자원봉사자등록소 등 기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

붙임 # 2

《피해상황 분석편람》

● 사상자 피해상황

순번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사상위치	사상원인	비고

● 부동산 피해상황

피해물건명	피해의 종별 (소손,수손,기타)	수량 또는 면적	경과년수

● 동산 피해상황

품명	수량	피해액	피해의 종별 (소손,수손,기타)	피해장소	비고

《최 초 보 고 서》

수 신 :	시행일시 :
참 조 :	발 신 : (인)
화 재 명 :	

사고개요

- 일 시 : (접수 : , 출동 :)
- 장 소 :
- 원 인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사망 , 부상)

동원인원 및 장비

-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의료기관 명,
공무원 명, 자원봉사자 명, 기타 명)
-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중장비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지원 및 조치사항

-
-
-

《중 간 보 고 서》

수 신 : 시행일시 : 화 재 명 :	접수일시 : 발 신 : (인)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사고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현재 상황 :) ○ 장 소 : ○ 원 인 : ○ 피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 명 (사망 , 부상) - 재산피해 : 천원(동산, , 부동산)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동원인원 및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의료기관 명, 공무원 명, 자원봉사자 명, 기타 명) ○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중장비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div> <div> <p>□ 진행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div>	

《최 종 보 고 서》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원 인 :
- 내 용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원(동산 , 부동산)

동원인원 및 장비

-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공무원 명, 기타 명)
-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

-
-

환자이송 현황

- 사망자 : 총 명(남자 명, 여자 명, 미상 명)
- 부상자 : 총 명(중상 명, 경상 명)
* 00병원 명, 00의료원 명, 00병원 명.
00병원 명, 00대학병원 명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및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이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되었음.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3
제2절 법적 근거	3
제3절 적용 범위	3
제4절 위기 형태	3
제5절 위기 경보	4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6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7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11
1. 상황	11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1
제2절 주의	12
1. 상황	12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2
제3절 경계	13
1. 상황	13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3
제4절 심각	14
1. 상황	14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4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1 상황	15
2 조치사항 및 절차	15
가. 조치 목록	15
나.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5
3 관계기관 주요 조치사항	16
가.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16
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17

부 록 [참고자료]

1. 법정 감염병 현황	20
2. 학교 집단환자 발생현황 보고서	21
3. 감염병 발생현황 통계보고서	22
4. 등교중지.휴업.휴교	23
5. 호흡기 감염병 휴업기준 마련시 고려사항	24
6. 수인성 감염병 예방수칙	25
7. 세균성이질 환자의 예방과 주의사항	26

제 1 장 개 요

제1절 목 적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감염병** 분야 위기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2절 법적 근거

가.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

-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보건의료·**감염병**관리 관련 법령

- (1) 보건의료기본법
- (2) **감염병**예방법
- (3) 검역법
- (4) 의료법
- (5)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 (6) 학교보건법
- (7) 유아교육법
- (8) 초·중등교육법
- (9) 고등교육법

제3절 적용 범위

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설학원,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학교에 대해 적용

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 및 과거에 창궐했던 재출현 **감염병**, 또는 수해지역의 수인성 **감염병** 등에 적용

다. 대량 환자 발생, 대규모 사망자 발생 등 **감염병** 분야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적용

제4절 위기 형태

가.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국적 확산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로 입국,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 해외 신종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로 입국 전파되어 교육기관에서도 **감염학생**이 발생되고 인접학생 및 가정으로 확산

나.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 환자가 교육기관에서도 발생되어 인접학생 및 가정으로 확산

다. 국내 수인성·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수인성**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사라진 **감염병**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어 대규모 환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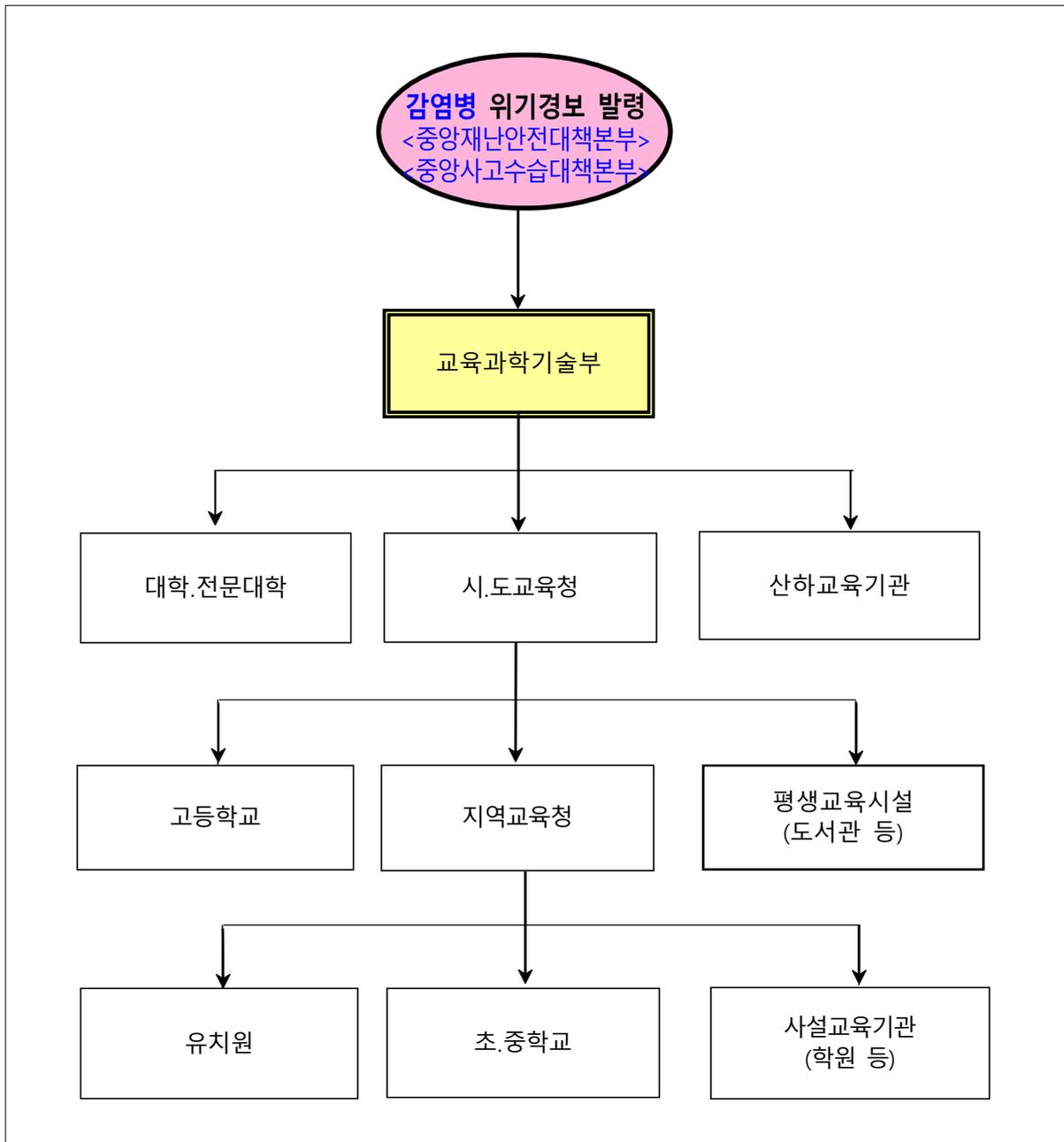
→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해지역 교육기관에서 대규모 수인성 **감염병** 또는 재출현 **감염병**이 발생되어 인접학생 및 가정으로 확산

제5절 위기 경보

1.5.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 감시 활동 - 대비계획 점검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식별 - 협조체계 가동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농후 - 대비체계 가동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기로 진입 직전의 상태 - 즉각 대응역량 총동원

1.5.2 위기경보 전파 체계도



☞ 교육과학기술부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내용을 산하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청 및 대학 등과 협의하여 학교 휴업 또는 휴교 등의 조치 강구/시행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6.1 위기대응 지침

■ 대응개념

- 목표 : 감염병의 교육기관내 발생방지 및 확산 차단
- 대응방향
 - 감염병 교육기관내 발생 및 전파 원천 차단
 - 감염자 및 보균자, 유증상자 조기발견 격리치료 및 확산 방지
 -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음용수, 급식 등 위생 강화
 - 해외여행 자제유도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 개인위생 등 예방교육 강화

■ 대응지침

- 학생, 교직원 단체 야외활동 금지 및 예방수칙 제공,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 수시파악 및 정보제공을 통한 신고 유도, 방역 당국과 협의 환자격리, 등교금지 등 필요조치 강구
- 교육시설 및 환자 분비물과 오염된 물건에 대한 소독 실시, 음용수, 학교급식 위생 강화 및 제공중단 등 단계별 대응
-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감염병 발생 무렵 해외 귀국 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잠복기간 고려) 후 전염력이 상실된 안전한 경우만 교육기관에 합류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와 연계 강화 및 협조당부

1.6.2 판단/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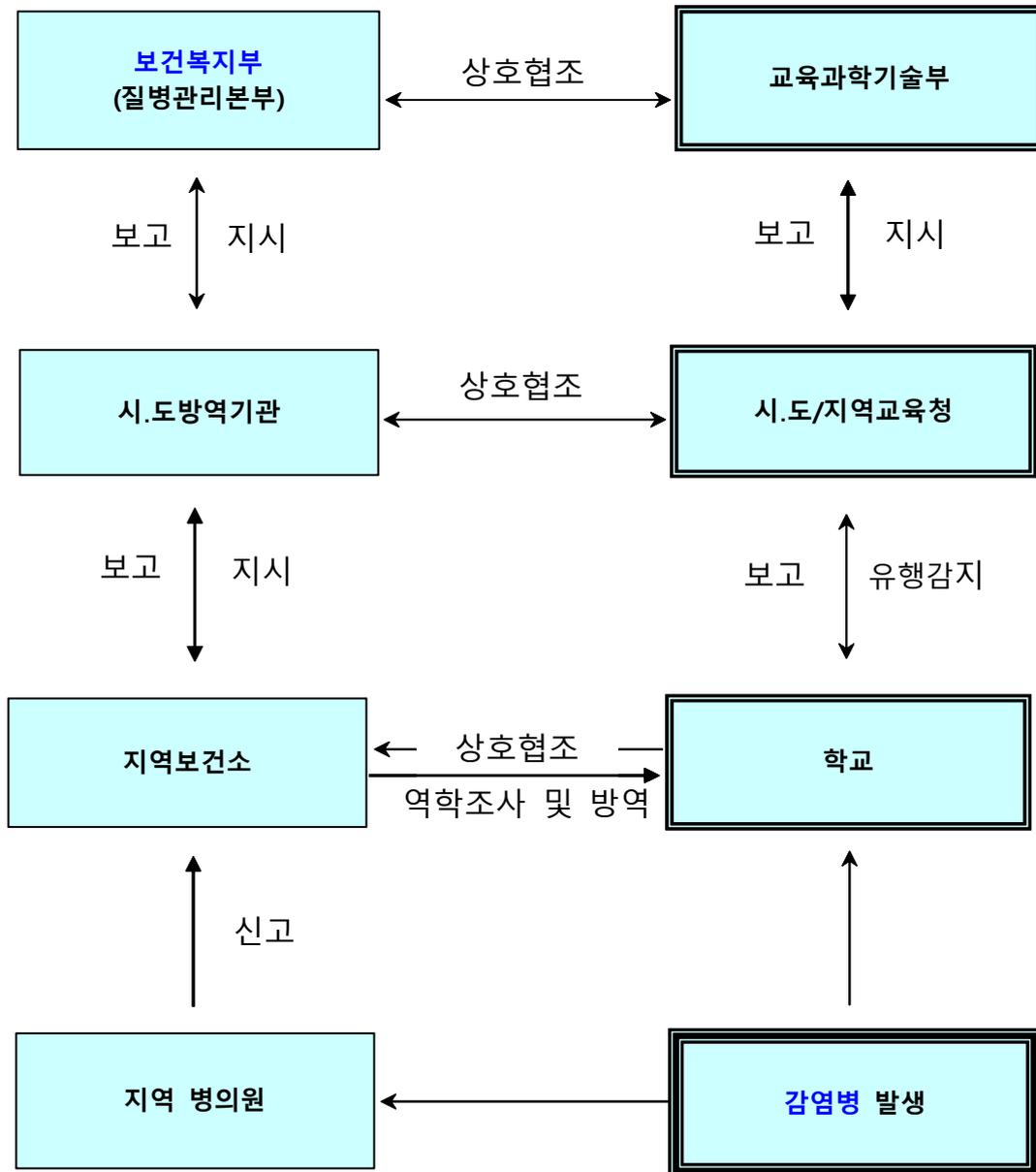
■ 감염병 증상, 잠복기, 확산 추세, 유관기관 대응 태세

- 발생지, 발생장소, 규모, 주요증상, 감염경로, 잠복기간, 예방수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을 통해 단계별 대응
- 유관기관의 준비 및 대응태세, 협력체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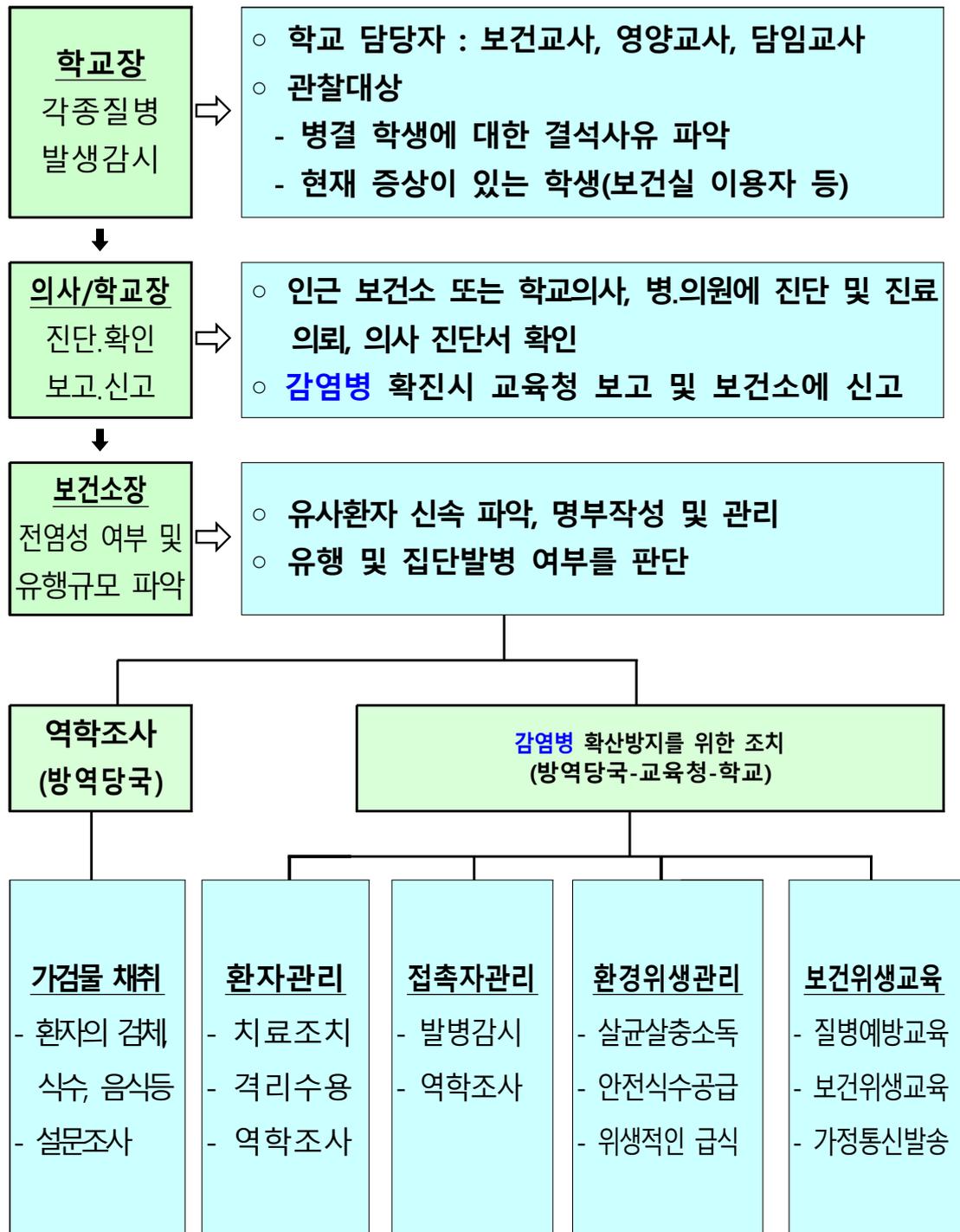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 감염병 관리업무 수행 체계

가. 기관간 관리/보고 체계



나. 학교 감염병 발생 관리체계



◎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는 유치원/ 대학/ 학원/ 도서관 등의 경우도 동일한 체계 유지

2. 기관별 수행업무 및 조치사항

☐ 교육과학기술부내 "대책반" 구성 운영

○ 운영시기 및 역할

- 감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소집, 운영되는 회의/협의기구로 정책지침 및 조치사항 협의 및 건의, 시행
-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각 과별 관련 역할 및 기능을 총괄 통제.조정을 통해 원활한 추진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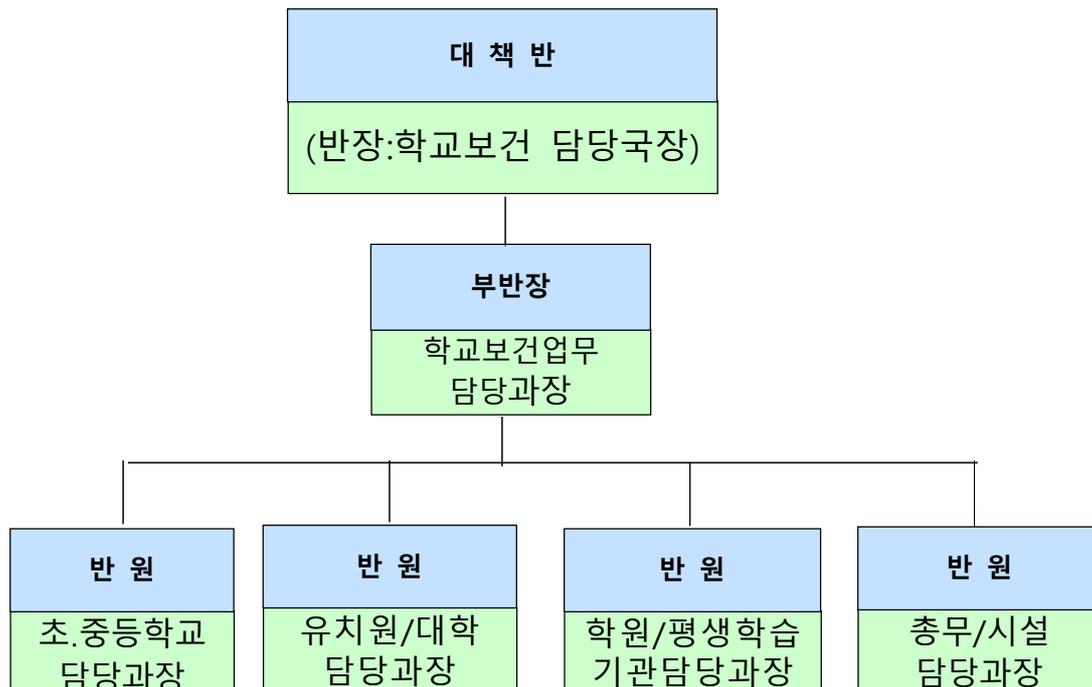
○ 운영 장소 : 학교보건업무 담당과

○ 주요임무

- 비상연락체제 유지, 현 상황 평가, 해당지역(학교) 임시휴업, 각급학교 임시 휴업.휴교 등 우선 조치사항 도출 결정지원
-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킬 주요 현안문제 제기/검토
* 상황처리를 위한 장관지침 마련
- 정책지침/조치사항 건의, 결정사항 시행
- 정부 유관부처와 업무 협조(보건복지부 등)
- 국회/언론 대응책 마련 등 부가조치

○ 편 성

[교육과학기술부내 대책반구성 조직도]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거 적용함

☐ 학교內 “상황반” 구성 운영

※ 유치원/대학/ 학원/도서관 등은 여건을 고려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

○ 운영시기 및 역할

- 기관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현 상황 파악, 임시휴업, 휴교 등 우선 조치사항 도출.결정 시행
- 정책지침/조치사항 건의, 결정사항 시행
- 보건소/병.의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 및 대응체계 구축
- 기타 학부모, 대외홍보 등 부가조치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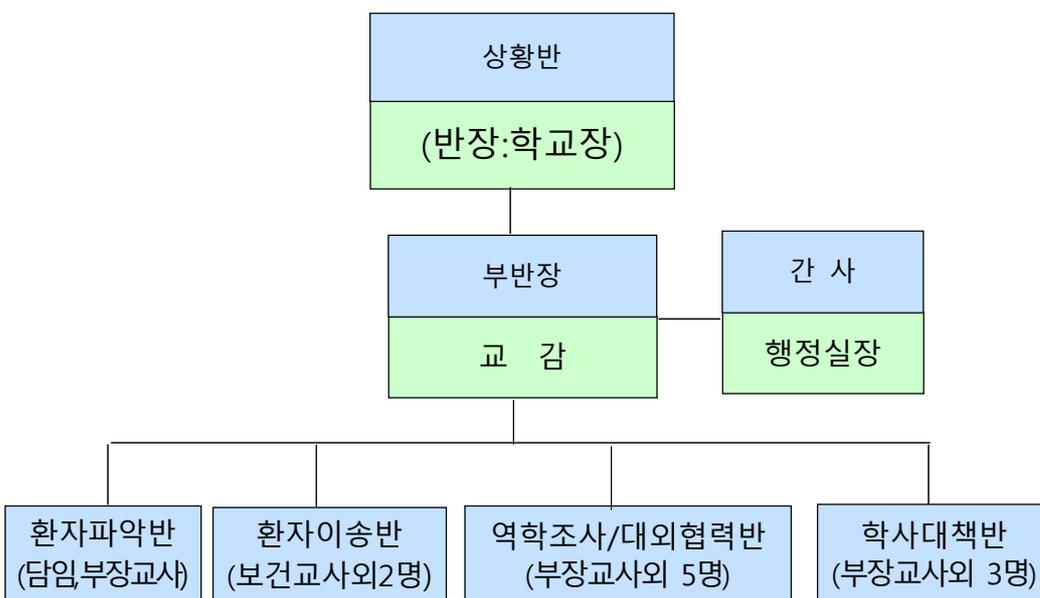
○ 운영 장소 : 학교내 별도상황실 확보

○ 주요임무

- 상황반장/부반장 : 상황반 지휘, 통제, 조정 등
- 간사 : 행정지원 및 대외보고 예산지원 등 지원
- 환자 파악반 : 부장교사 1명이 담임교사를 통해 감염자 및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 등
- 환자 이송반 : 보건교사 주도하에 환자 이송 및 격리지원 등
- 역학조사/대외 협력반 : 역학조사 활동 및 방역활동 지원 등
- 학사대책반 : 수업결손 대책마련/학생 및 학부모 예방교육 등

○ 편 성

[학교內 감염병관리 상황반 편성.운영]



제 2 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 심

1. 상 황

-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인접국가에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및 원인불명의 감염질환의 발생 및 국내 유입징후가 있는 상황
- 태풍, 집중호우 발생 기상예보 및 특보가 발령된 상태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교육과학기술부	○ 관련정보 수집.전파 및 대응태세 점검	
교육청	○ 관련정보 전파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태세 점검	
학교 등 교육시설	○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 대응태세 점검	

제2절 주 의

1. 상 황

-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인접 국가를 통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및 원인불명의 감염질환의 국내 유입·발생 및 재출현 감염병 국내 발생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서 산발적인 수인성 감염병 발생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지침마련 시달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여행자제, 손씻기 철저 등)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관련정보 전파 등 예방활동 강화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학교 등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교직원 등 포함) 보고 ○ 방역기관 협조하에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감염 우려자 파악(정밀진단 실시) 후 별도 격리(등교 중지) 조치 및 학부모에게 통보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관리강화 ○ 음용수 및 급식제공 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제3절 경 계

1. 상 황

- 국내 발생 또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상황
- 태풍 . 집중 호우로 침수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되어 인근 지역으로 전파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지침마련 시달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여행자제, 손씻기 철저 등)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관련정보 전파 등 활동 강화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 각급학교 휴업기준 마련 	
학교 등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교직원 등 포함) 보고 ○ 방역기관 협조하에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감염 우려자 파악 정밀진단 실시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학부모에게 통보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관리강화 ○ 음용수 및 급식제공 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 자제/금지 	

제4절 심 각

1. 상 황

- 국내 발생 또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 태풍 . 집중 호우로 침수지역에서 발생한 수인성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2.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지침마련 시달 ○ 필요시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 필요시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학교 등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교직원 등 포함) 보고 ○ 방역기관 협조하에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감염 우려자 파악 정밀진단 실시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학부모에게 통보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관리강화 ○ 음용수 및 급식제공 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조치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 금지 	

제 3 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1. 상 황

- 가.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다.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2.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 기관별 위기경보 접수.보고 및 신속 전파
- 비상근무 체제 돌입 및 기관별 대책반/상황반 활동개시
- 방역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하에 확산 방지활동 지원
- 환자 및 보균자, 유증상자 규모.추세 파악 대책마련
- 환경위생/개인위생 관리 홍보 및 교육 강화

나.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위기경보 상황을 접수받아 산하기관(교육청/대학 등)에 즉시 전파 ○ 총괄대책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대응지침 마련 시달 ○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지도 및 시달 	
시.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위기경보 상황을 접수받아 산하기관(지역교육청, 고등학교, 도서관, 수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즉시 전파 ○ 총괄대책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 방역기관 방역 및 예방활동 협조 ○ 확산대비 일제 휴업조치 또는 휴교령 시달 	

구분	내용	비고
지역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기경보 상황을 접수받아 산하기관(초.중학교/유치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즉시 전파 ○ 총괄대책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 방역기관 방역 및 예방활동 협조 ○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령 시달 	
유치원 초.중.고 대학 및 도서관 학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으로부터 위기경보 상황을 접수받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즉시 전파 ○ 상황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교직원 등 포함) 보고 ○ 방역기관 협조하에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감염 우려자 파악 정밀진단 실시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학부모에게 통보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관리강화 ○ 음용수 및 급식제공 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방역기관 방역 및 예방활동 협조 ○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조치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 금지조치 	

☞ 유치원, 대학, 도서관, 사설학원 등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부 및 세부내용을 조정 대처

3. 관계기관 주요 조치사항

가.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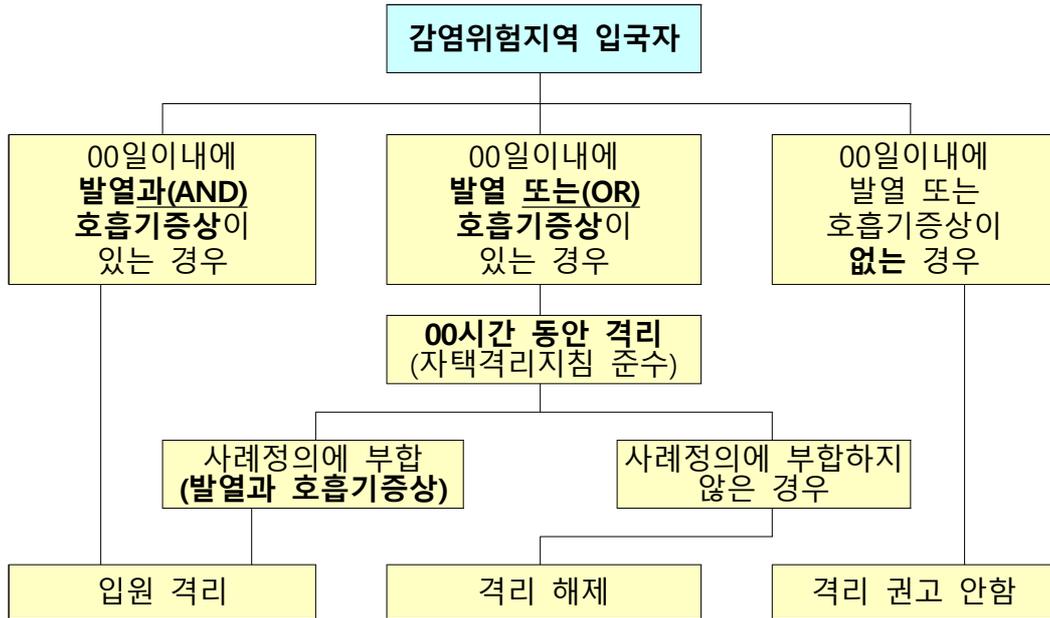
□ 초동조치

- 국.내외 발생동향 모니터링
 -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일일 감시체계 운영
 - 병.의원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웹보고 체계 유지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 정부 각 부처 주요조치 상황 협의.지원.조정 등 수행
- 대책반 소집 : 소집 대상자, 활동 내용
 - 유관 및 중앙부처간에 비상 통신망 가동

- 현지 전문가 파견 및 사례조사, 방역물자, 예방약품 지원, 의료지원반 운영 등 신속한 방역조치

□ 긴급 방역 등 조치

- 검역.입국자 관리 강화
 - 입국자 발열감시(적외선카메라 가동) 및 진단
 -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심환자에 대한 자택격리 및 병원 후송



- 방역물자 지원 및 대응요원 추가 확보
 - 적외선카메라, PCR(진단장비), 보호장비 등 지급
 - 부족인력 발생시 군의료진 확보 등 대체인력 추가 투입
 - 격리병원, 격리소 추가 확보 및 운영
- 유행관찰 및 대응조치
 -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13개 검역소를 통한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

□ 후속조치

- 재발방지대책 강구
 - 위기대응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안
 - 국외 감염병발생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검역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 비축.관리 보완
 - 전국 검역 및 방역요원에 대한 평가 및 교육 실시

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초동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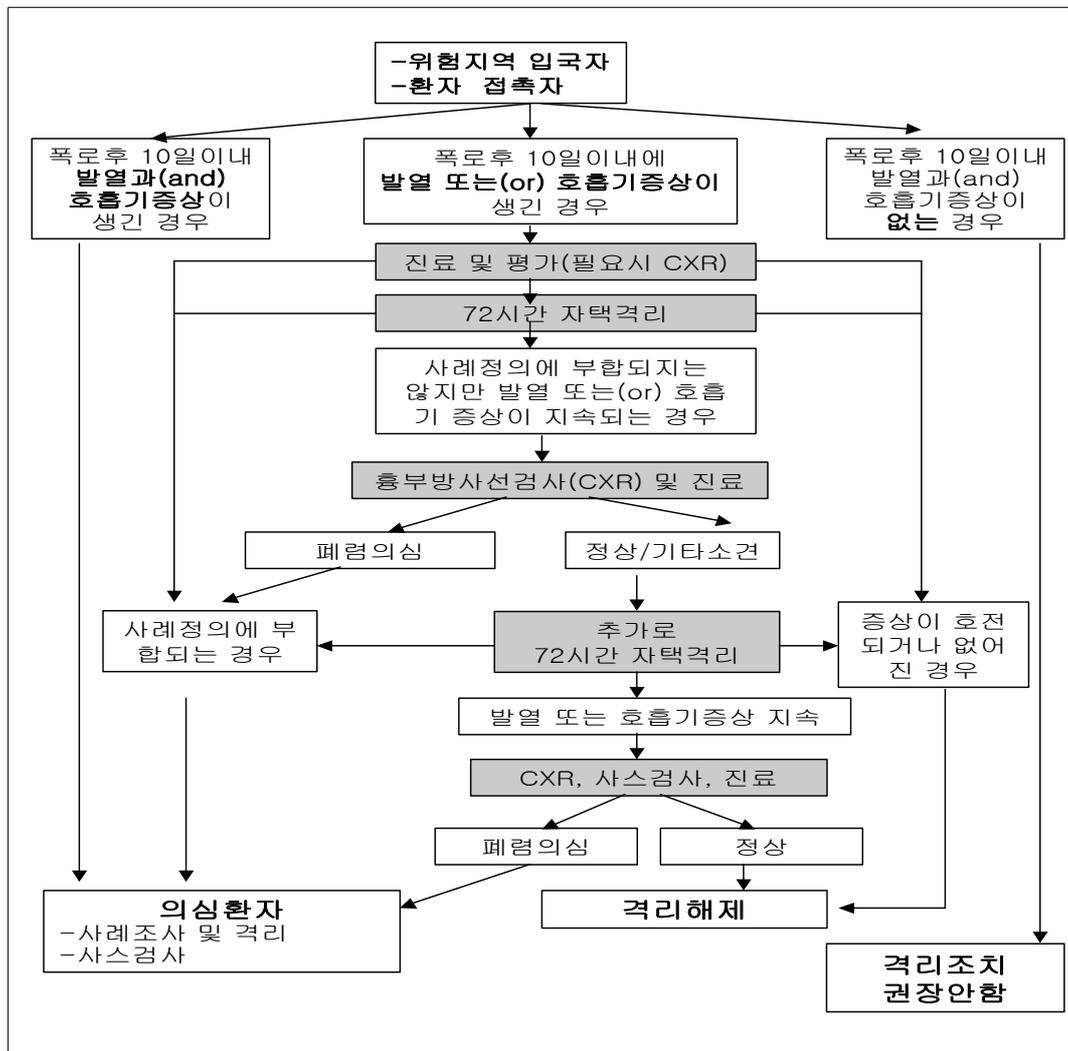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 정부 각 부처 주요조치 상황 협의.지원.조정 등 수행
- 역학조사
 - 역학조사반 구성 및 현지 유행 양상 조사 실시
- 대책반 소집 : 소집 대상자, 활동 내용

- 유관 중앙부처간에 비상 통신망 가동
- 현지 전문가 파견 및 사례조사, 방역물자, 예방약품 지원, 의료지원반 운영 등 신속한 방역조치

□ 긴급 방역 등 조치

- 방역·검역 가능자원 총 동원
 -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물자 신속 지원
 - 미발생 지역에 대한 환자감시 강화
 - 13개 검역소를 통한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
 - 격리병원, 격리소 추가 확보 및 운영
- 신속한 병원체 진단 및 관리
- 국제 전문가 현지파견 및 공동역학조사
- 경보 발령 등 대국민 행동요령 시달
 - 응급의료센터(전화:1339)를 통한 대국민 안내·상담 및 교육
- 환자관리 운영 체계도에 따른 신속한 조치

< 환자관리 운영 체계도 >



※ 자택격리 시간, 진료기준, 접촉자 추적관리 기간 등은 질병의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부 록【참고자료】

법정감염병 현황

구 분	분류 기준	감염병명				
제1군 법정감염병	○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제2군 법정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관리가 가능 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제3군 법정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쯤쯤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제4군 법정감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감염병 증후군, 재출현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 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감염병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 증 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야토병 -규열, 신종 감염병 증후군				
지정감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어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한 감염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환자 감시대상</td> <td>-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 -상구균(VRSA)감염증, 샐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 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병원체 감시대상</td> <td>-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ETEC)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EIEC)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EPEC)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에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td> </tr> </table>	환자 감시대상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 -상구균(VRSA)감염증, 샐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 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	병원체 감시대상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ETEC)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EIEC)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EPEC)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에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환자 감시대상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 -상구균(VRSA)감염증, 샐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 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					
병원체 감시대상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ETEC)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EIEC)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EPEC)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에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참고자료 3】

감염병 발생현황 통계보고서

기관명 :

1. 법정 감염병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제1군	(병명)										
제2군											
제3군											
제4군											
계											

2. 신종 감염병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병명)											

※ 위기상황 발생시 매일 집계 보고

【참고자료 4】

등교중지.휴업.휴교

□ 등교중지

- 사 유 : 학생 및 교직원중 **감염병**(**법정감염병** 및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함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시행자 : 학교의 장

□ 휴 업

- 사 유 :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휴업을 실시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 시행자 : 학교의 장
- 보 고 : 학교의 장은 임시휴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
- 기 타 : 임시휴업을 실시한 때에는 방학 등을 조정하여 법정수업일(유치원 180일 초중등 220일) 준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휴교(휴업)

- 사 유 :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휴업명령을 하고, 학교의 장이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휴교를 명할 수 있음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 시행자 : 관할청(교육장 : 유.초.중학교, 교육감 : 고등학교)
- 시행의무 :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휴업명령을 준수
- 수업일수 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임시휴업을 실시한 때에는 방학 등을 조정하여 법정수업일(유치원 180일, 초.중등 220일) 준수
 - 단, 천재지변, 주5일 수업 등의 사유로 감독청 승인을 얻은 경우 수업일수의 10%이내 단축가능

【참고자료 5】

호흡기 감염병 휴업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고려요소

- 학 교 급 : 신체 성숙도가 낮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휴업을 검토 하되, **특수학교는 최우선**으로 고려
- 학교 규모 :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휴업 검토
- 인구 밀도 : **단독주택** 지역보다 **아파트지역**을 우선 휴업 검토하고, **농촌지역**보다는 인구밀도가 높은 **중소도시, 대도시**를 우선 휴업 검토
- 감 염 률 : **감염률이 높은 학급/학년/학교**를 우선 휴업 검토
- 확산 속도 : **확산속도가 빠른 학급/학년/학교**를 우선 휴업 검토

□ 고려요소 활용 방안(예시)

- 앞서 제시한 고려요소 별로 위험도 점수를 5점 척도로 구분

< 위험도 척도 구분 예시 >

위험도 점수 고려요소		1	2	3	4	5
학교환 경요인	학교급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규모	100명 이하	100명~200명	200명~400명	400명~500명	500명 이상
	인구밀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질병요 인	감염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확산속도	매우 느림	느림	보통	빠름	매우 빠름

※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속도 점수기준은 지역 실정에 따라 결정

-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 : **질병요인만을 고려**하여 특정학급/학년의 감염률이나 확산 속도가 높고 빠를 경우 우선 휴업
- 학교단위 휴업 : 학교환경요인과 질병요인을 모두 고려한 **위험도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질병요인에 의한 위험도 점수가 매우 높을 경우** 합산점수와 관계없이 휴업 가능

◆ 수인성 감염병 예방수칙 ◆

■ 개인 및 가정의 위생 수칙

- 음식물 조리 및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안전한 음용수 섭취 및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며,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도마 등 조리 기구는 매일 소독하고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 설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행주, 칼, 도마 등은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용으로 분리, 교체 사용합니다.
-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료수는 끓여서 냉각한 후 제공합니다.
- 상갓집이나 결혼식 등으로 손님접대 시에는 날 음식 접대를 삼가고 다과류나 안전이 확보된 음식만을 제공합니다.

【참고자료 7】

세균성이질 환자의 예방과 주의사항

세균성이질?

- ◆ 세균성 이질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고열, 설사(고름이나 피가 섞인 설사), 복통,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가벼운 묽은 설사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가족이나 학생 중 1명만 감염이 되어도 환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 물이나 직접 접촉을 통해 가족이나 학급 전체에게 퍼지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감염 시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세균성이질에 의한 설사환자의 치료

- ◆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5-7일 내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약을 충분한 기간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 ◆ 탈수가 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세균성이질의 예방 및 전파방지

- ◆ 화장실을 갔다온 뒤, 식사 전, 조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 화장실 및 주변소독을 철저히 하며, 음식물에 파리가 닿지 않도록 한다.
- ◆ 증상이 없어져 회복이 되더라도 환자의 대변을 통해 이질균이 계속 배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 ◆ 이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변배양검사가 24시간 간격으로 2번 정상일 때까지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광보건대학 비상근무체계 및 유관기관연락망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2
1 조직 및 기능	2
2 재난상황실 운영(재난 단계별 계획)	18
제2절 재난관리업무개선	4
1 검토배경	18
2 재난관리 주요업무 내용	18
제3절 비상근무체제확립	4
1 재난상황 근무체계 구축	18
2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18

부 록 [참고자료]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56
2. 원광보건대학 소방조직편성표	56
3. 원 광 보 건 대 학 비 상 대 책 반	56
4. 사고유형별 유관기관 연락체계도	56
5. 긴급구조 유관기관 연락망 (익산시)	56
6. 재해보고 계통도	56
7. 재해보고요령	56
8. 재난상황보고	56
9. 재난상황통보(도,시,군재난대책본부 통보용)	56
10. 재해복구 결과보고서	56
11. 학교시설점검주요사항	56

제1장 개요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1. 조직 및 기능

가. 조직구성

- 비상연락망 조직연계

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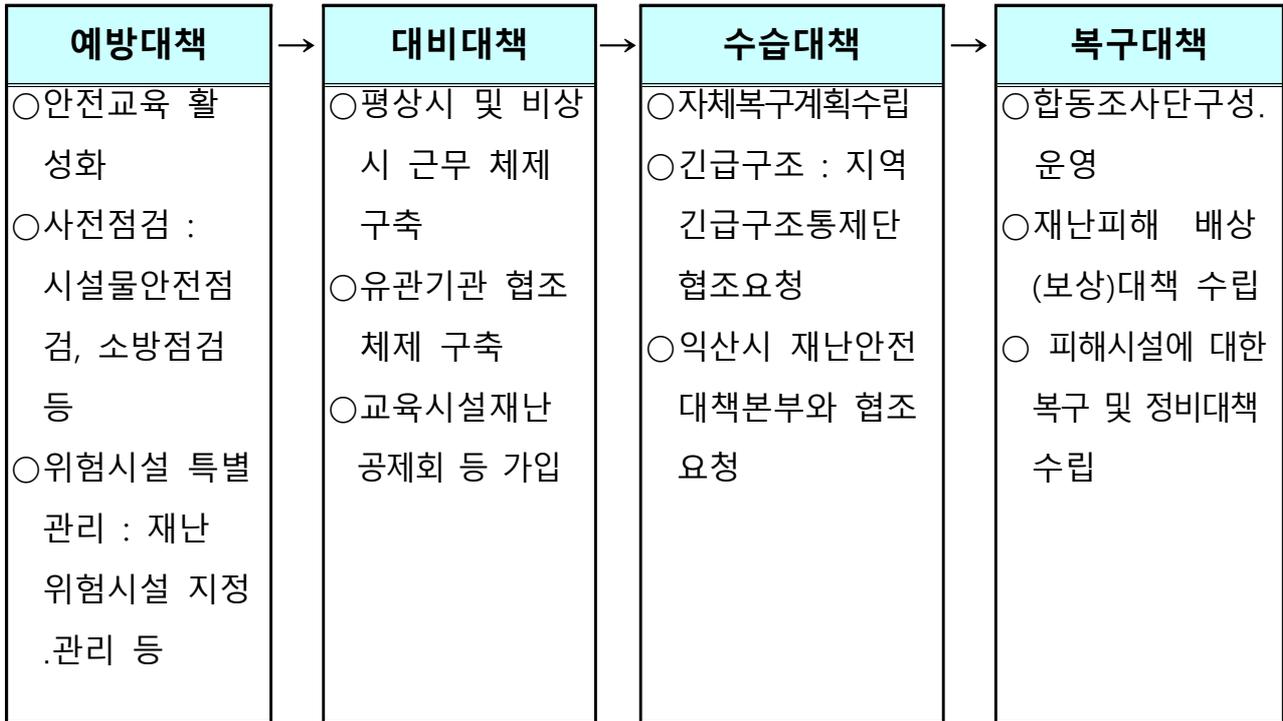
- 풍.수해, 화재, 폭염 등 재난관리계획
 - 재난예방 및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대책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재난관리대책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물 및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재난관리 중점사항

- 일상업무와 연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정비.강화하며, 재난발생시 해당 기관에서 구조.수습.복구 등 대책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강화, 안전우려시설의 응급조치 및 해소
- 재난위험시설 해소예산 최우선적 확보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 재해에 강한 각종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확보
 - 재해예방, 응급복구의 종합적인 대응체제 구축, 재해예방 산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 교직원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훈련강화, 방재인력의 전문화

- 신속한 응급.대응대책의 강화
 - 신속.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조기 대응을 위한 재해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필요한 통신수단 강화
 -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해대책 추진 및 긴급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라. 단계별 업무기능



2. 재난상황실 운영(재난 단계별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단계 : 준비체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중 : 주관부서 책임으로 상황 모니터링 • 근무시간외(18:0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 주관부서 직원 각1명 교대 근무 - 교육청, 소속기관 및 출연(연), 대학교 : 기관별 자체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 주요 대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근무 태세 준비 및 조치 - 주요 시설물 순찰 점검 강화 등 	
2단계 : 경계체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실·국장 또는 기관별 책임자 비상근무체제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중 : 담당자 비상근무 체제 돌입 - 근무시간외(18:00~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직원 1명(교대근무) · 교육청, 소속기관 및 출연(연), 대학교 : 자체계획에 의거 근무 • 주요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조치 (예 홍수·태풍 영향권내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 긴급대피 및 수용조치)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재해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 조치 	
3단계 : 비상체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및 해당 기관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소속기관 및 출연(연), 대학(교) : 자체규정 및 계획에 의거 근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교육과학기술부 인력 파견 	중앙사고수습 본부 설치·운영

제2절 재난관리업무개선

1. 검토배경

-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등 재난관리 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나, 학교 내의 재난업무 체계가 모호하여 관련업무 수행에 혼란야기
- 업무지도 체계에 맞추어 업무별, 부서별 담당부서 재정립 필요

2. 재난관리 주요업무 내용

- 재난.재해에 대한 지원대책수립 및 시설 유형별 관리대책 수립
- 일상업무와 연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정비.강화하며, 재난발생시 해당기관에서 구조.수습.복구 등 대책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강화, 안전우려시설의 응급조치 및 해소
- 재난위험시설 해소예산 최우선적 확보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 재해에 강한 각종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확보
 - 재해예방, 응급, 복구의 종합적인 대응체제 구축, 재해예방 산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제3절 비상근무체제확립

1. 재난상황 근무체계 구축

가. 1단계(준비단계) : 각종「주의보」발령시

- 근무시간 중 : 관리팀 각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18 : 00~22 : 00)
 - 직원 2인 1개조 교대 근무(자체 근무조 편성)
- 주요 대처내용
 - 호우.태풍 동향 파악 및 전파,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근무 태세돌입 준비, 주요 시설물 순찰 점검 강화 등

나. 2단계(경계단계) : 지역적 각종「경보」발령시

- 총장 지휘하에 전교·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중 : 관리팀 비상근무 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18 : 00 ~ 24 : 00)
재난대책반 편성(4개반) 교대 근무
 - ※ 학교 : 자체계획에 의거 근무
- 주요 대처내용
 - 홍수·태풍등 영향권내 해안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 긴급대피 및 수용조치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조치

다. 3단계(비상단계) : 전국적 각종「경보」 발령시(지진발생시)

- 총장 지휘하에 전 교·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중 : 총무처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18 : 00 ~ 익일 09 : 00)
 - 재난대책반 편성(4개반) 교대 근무
- 주요 대처내용
 - 경보 및 실정에 따라 재해대책 신속 추진
- 비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재난상황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관리팀에 근무종료일 08:00까지 통보
- 재난상황에 따라 평시 또는 비상시로 구분하여 상황근무체제 운영
 - 평시 주간 및 야간에는 관리팀으로 연락
 - 비상시에는 재난규모에 따라 별도 『재난대책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

2.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구 분	임무 및 근무요령	비 고
1단계 (주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해대책본부의 상황근무내용과 연계하여 기상특보 전파 ○ 사전재해 예방조치 지시, 확인 및 대처요령 전파.지시 	
2.3단계 (경계. 심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상황 파악 집계 및 보고서 작성 ○ 긴급대처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지시 ○ 기타 재해 상황 전반을 관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체계 : 반장 → 안전관리담당 → 관리팀장(총무 처장) → 총장 ※ 재난발생시 익산시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 ○ 근무지 : 행정종합사무실내 ○ 비상근무체제 변경시 전일 근무조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 근무교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 08:30 ~ 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 휴일 :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교대 근무 ※ 08:0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 ○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부 록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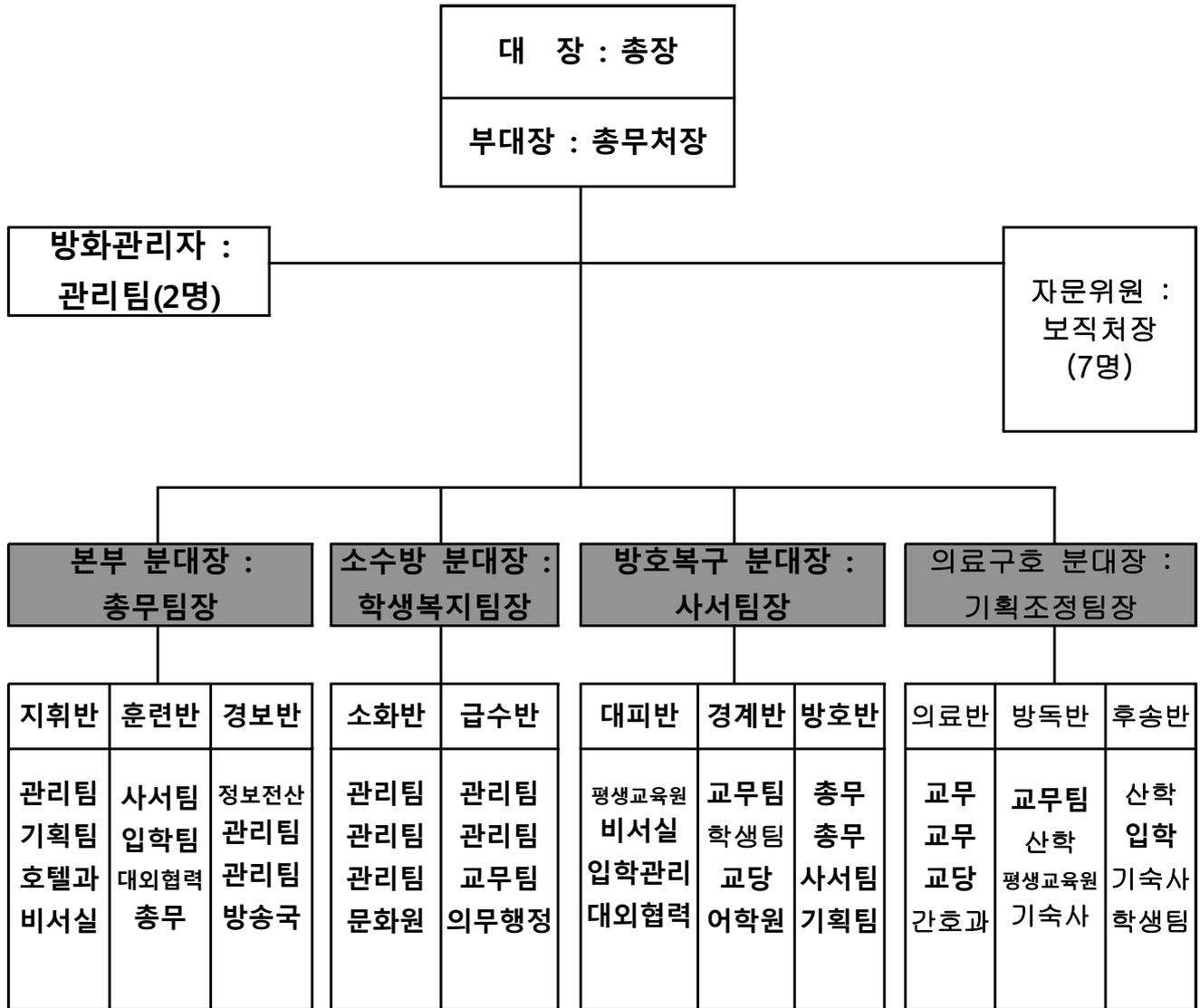
<붙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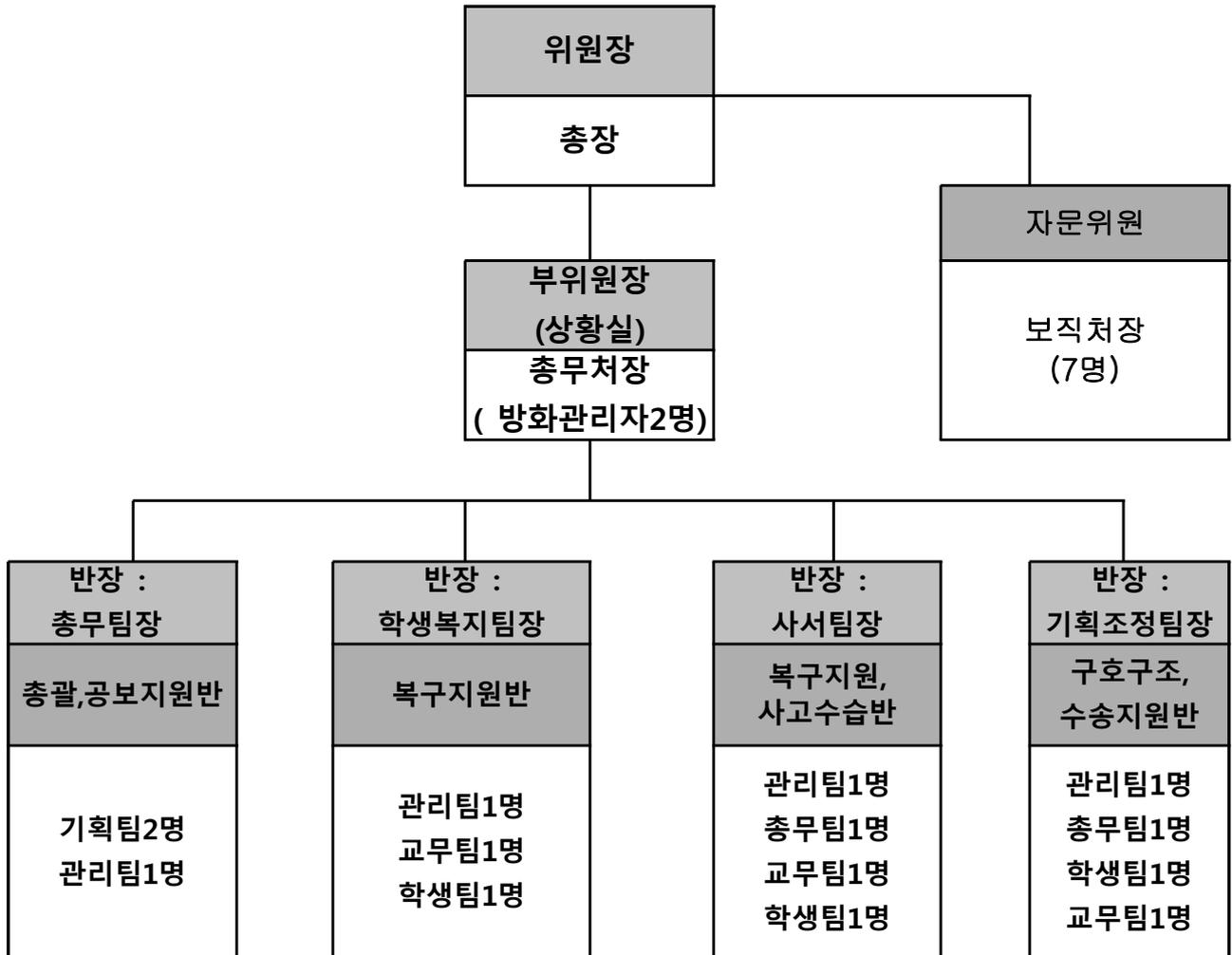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기 관 명	연 락 처		비 고
	전 화 번 호	F A X	
교육과학기술부(총괄) 비상계획담당관실	02)2100-6189	02)2100-6193	
교육시설지원팀	02)2100-6300	02)2100-6305	
원자력방재팀	02)2100-6986	02)2100-6991	
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3	02)2100-6545	
학교운영지원과	02)2100-6494	02)2100-6499	
연구환경안전팀	02)2100-6889	02)2100-6893	

원광보건대학교 소방 조직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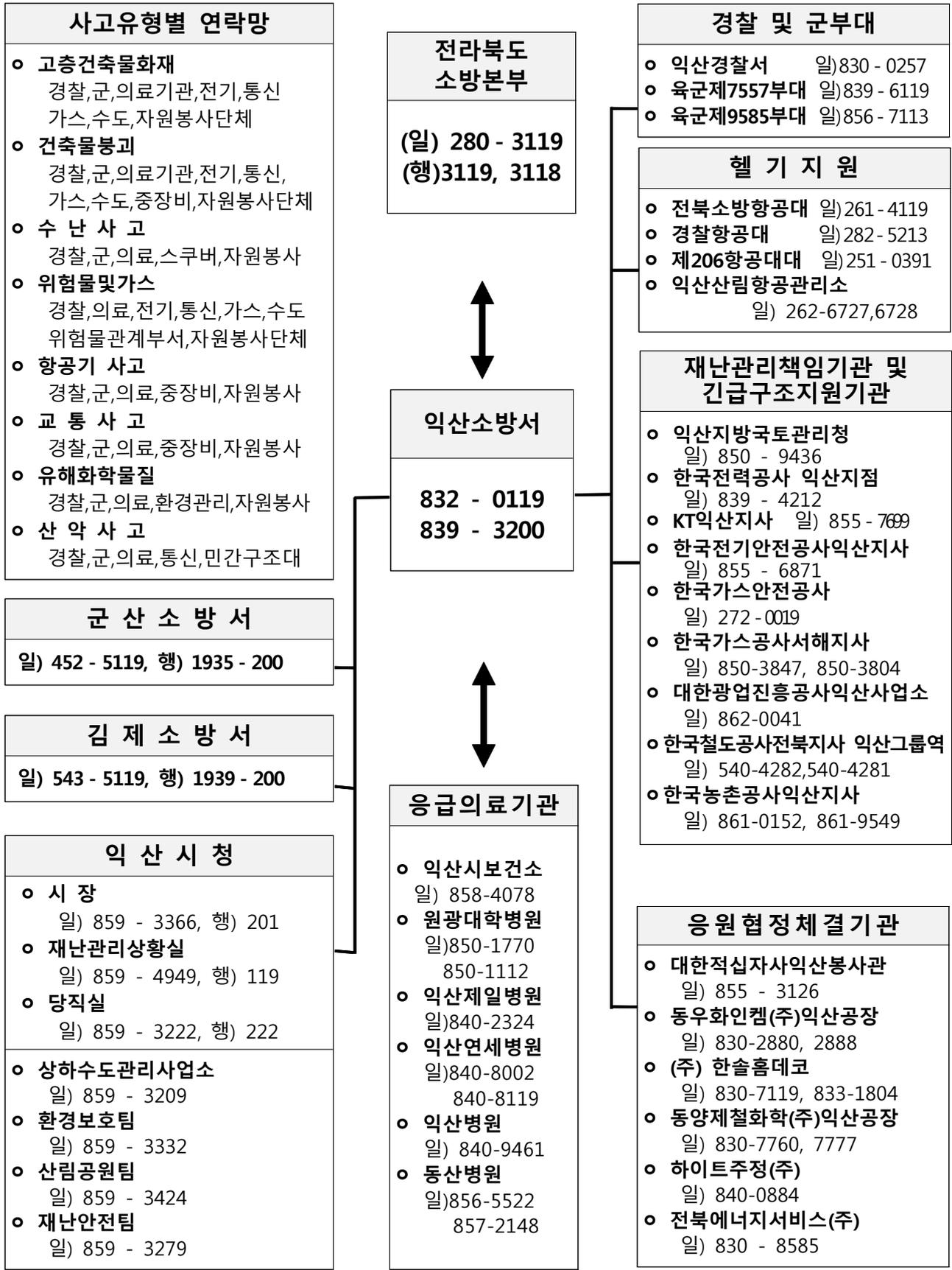


원광보건대학 비상대책반



- 재난피해지역 피해 점검 실시
- 피해복구계획 및 복구내역 산출
- 재난위험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실시 여부 결정)

사고유형별 유관기관 연락체계도



긴급구조 유관기관 연락망 (익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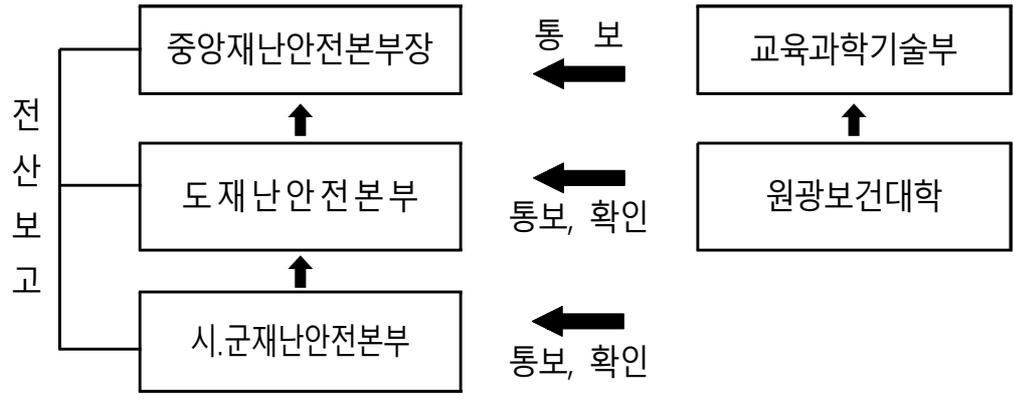
행정기관(시,군)	소방방재청	경찰관서
<input type="checkbox"/> 익산시 : 859-3494 859-3279 859-4949 <input type="checkbox"/> 익산시보건소: 858-4078 858-4079	<input type="checkbox"/> 중앙재해대책본부 ■ 일반 : 02-3703-5420 ■ 행정 : 5420 <input type="checkbox"/> 재난종합상황실(소방) ■ 일반 02)2100-5550-5504 .행정 111- 5550-5504 <input type="checkbox"/> J-119팀 ■ 일반 : 02-2100-5360 .행정 : 111-5360-5374	<input type="checkbox"/> 상 황 실 841-0112 <input type="checkbox"/> 경비교통과 830-0257
의료기관	↑↓	군 부 대
<input type="checkbox"/> 원광대병원 850-1770 850-1114 <input type="checkbox"/> 익산연세병원 840-8002 840-8119 <input type="checkbox"/> 익산제일병원 840-2324 <input type="checkbox"/> 익산병원 840-9461 840-9119 <input type="checkbox"/> 동산병원 856-5522 857-2148	전라북도 (일반 / 행정)	<input type="checkbox"/> 제7공수여단 839-6410 <input type="checkbox"/> 제9585부대제3대대 856-7113,856-7488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본부장실: 280-3830/3830 <input type="checkbox"/> 방호구조: 280-3851/3857 <input type="checkbox"/> 상 황 실: 280-3119/3119	유관기관
<input type="checkbox"/> (주)한솔홀데코 익산공장 830-7119,833-1804 <input type="checkbox"/> 동양제철화학(주)익산공장 830-7760,7777 <input type="checkbox"/> 하이트주정(주) 840-0884 <input type="checkbox"/> 동우화인켐(주)익산공장 830-2880,830-2888 <input type="checkbox"/> (사)한국수상레저 안전연합회익산지구대 854-3207 <input type="checkbox"/> 황등중기건설 858-9638 <input type="checkbox"/> (유)익산형제중기운수 856-3111 <input type="checkbox"/> 세종익스프레스 835-2200 <input type="checkbox"/> 한국익스프레스 833-3456 <input type="checkbox"/> 해병익산전우회 851-4728 <input type="checkbox"/> 특전동지회익산시지회 836-9662 <input type="checkbox"/> 호남스킨스쿠버 862-7100	↑↓	<input type="checkbox"/> 한국전력공사익산지점 839-4212 <input type="checkbox"/> KT익산지사 855-7699 <input type="checkbox"/> 가스공사서해지사 850-3847,3804 <input type="checkbox"/> 익산지방국토청 850-9436,9260 <input type="checkbox"/> 익산우체국 840-8431 <input type="checkbox"/> 익산시교육청 850-8866 <input type="checkbox"/> 익산산림항공관리소 262-6727 <input type="checkbox"/> 한국철도공사전북지사 855-2264 <input type="checkbox"/> 한국농촌공사익산지사 860-0072 <input type="checkbox"/> 대한송유관공사전주지소 832-0865 <input type="checkbox"/> 대한광업진흥공사익산사업소 862-0041
	↑↓	기 타
	소방관서 (일반 / 행정)	<input type="checkbox"/> 전북에너지서비스(주) 830-8585 <input type="checkbox"/> 대한적십자사 855-3126, 280-5800 <input type="checkbox"/> 삼성3119 062)955-3119 <input type="checkbox"/>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전북지부 익산사무소 836-3451

<input type="checkbox"/> 전 주 : 250-4200 / 1933-200 <input type="checkbox"/> 완 산 : 220-4200 / 1934-200 <input type="checkbox"/> 군 산 : 452-5119 / 1935-200 <input type="checkbox"/> 익 산 : 832-0119 / 1936-200 <input type="checkbox"/> 정 읍 : 533-1743 / 1937-200	<input type="checkbox"/> 남 원 : 633-2119 / 1938-200 <input type="checkbox"/> 남 김 제 : 548-7119 / 1939-200 <input type="checkbox"/> 고 창 : 561-6547 / 1980-200 <input type="checkbox"/> 부 안 : 583-0119 / 1981-200 <input type="checkbox"/> 무 진 장 : 353-6119 / 1982-200 <input type="checkbox"/> 향 공 대 : 261-4119 / 52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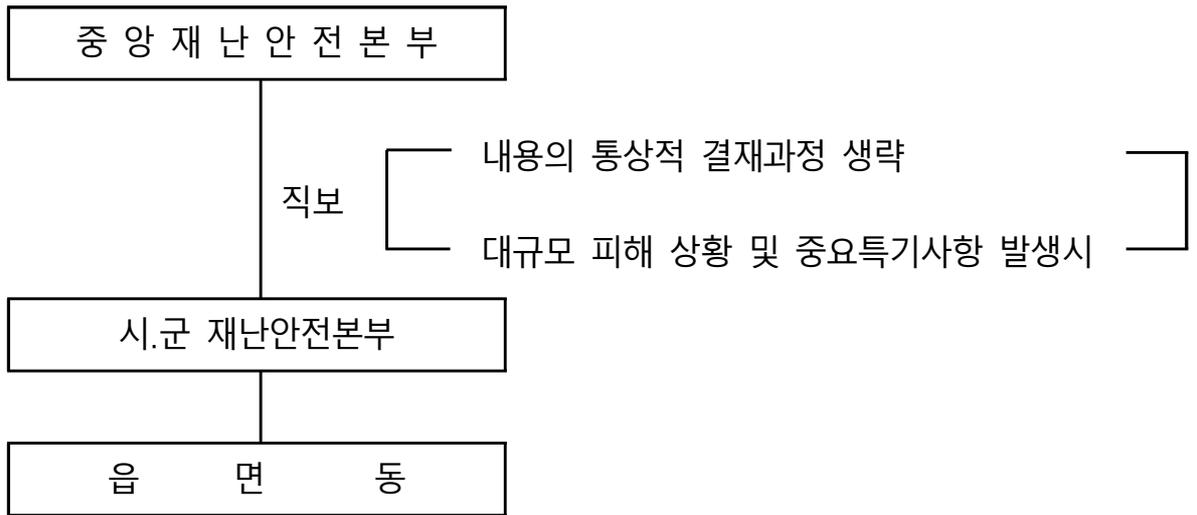
<붙임6>

재해보고 계통도

【 통상적 보고체계 】



【 직보체계 】



<붙임7>

재 해 보 고 요 령

구 분	보 고 시 기	보 고 사 항	보 고 방 법
가) 발생보고	○ 강우 또는 강설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 에서 피해발생 파악 즉시	○ 재난상황 보고서 내용	. 전 화
	○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 황에서 당일(1일 2회보고) - 10:00 기준, 11:00 까지 - 20:00 기준, 21:00 까지 보고	○ 재난상황보고서 ○ 사진2부 첨부 ○ 도, 시 . 군재해대책 본 부 통보	. 모사전송 . 서면보고
나) 복구결과 보고	○ 복구종료후 10일 이내	○ 재해복구결과 보고서 ○ 사진 2부 첨부	. 서면보고

<붙임 8>

재 난 상 황 보 고

I. 재해개요

1. 재해원인 :
2. 재해기간 :
3. 재해지역 :
4. 강우(강설)량 또는 지진진도 :

II. 피해상황

1. 인명피해

지역별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직 접 적 피 해 발 생 일 시 및 원 인		응 급 조 치 사 항	비 고
				발 생 일 시	피 해 원 인		

2. 시설피해

지역별	학 교 명	피 해 내 용					직 접 적 피 해 발 생 일 시 및 원 인		복 구 대 책		비 고
		시 설 명	구 조	피 해 정 도	피 해 량	피 해 액	발 생 일 시	피 해 원 인	복 구 소 요 액	복 구 계 획	

3. 기관(학교)별 이재민 수용상황

지역별	수용 학교	수용 시설	수용 사항						수용학교의 수업대책	비고
			시설명	실수	수용 예정기간	수용 세대주	수용 인원	수용 이유		

4. 학교 임시휴업 및 휴교현황

지역별	학교명	학 교 현 황				휴업또는 휴교기간	휴업또는 휴교사유	비고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5. 기타피해

Ⅲ. 참고사항

Ⅳ. 보고서 작성요령

- 재해원인은 "○○태풍"등으로 재해명을 기입
- 강수(강설)량은 보고일 현재량 기입
- 지역명은 시(군), 읍(면), 동(리) 단위까지 기입
- 인명피해의 피해구분은 부상, 실종, 사망 등으로 분류
- 인명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직원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직급 생년월일, 성별, 기.미혼 여부 등 인적사항 병기
- 시설 피해구조는 철.콘.슬, 시.벽.스 등의 구조를 기입

<붙임9>

재난상황통보(도, 시.군재난대책본부 통보용)

수 신 : 도, 시.군.재해대책본부장	접수일시: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기타()	
1. 일 시 :	
2. 장 소 :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사망 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기 타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력 : 명(군 경 소방 공무원 기타)	
.장비 :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붙임 10>

재해복구 결과 보고서

(단위 : 천원)

학 교 명	피해시설	복구소요액		예 산 조 치					집 행 액	복 구 완공일	비 고
		물량	금 액	국 고	지방비	공제회지원	자 체	계			

<붙임 11>

학교시설점검주요사항

(가) 부지 및 건물

점 검 사 항	이 상 유 무	조 치 사 항
1. 시설관리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기초 및 현관 바닥부분 등 침하된 곳은 없는가?		
3. 벽체에 균열이 발생한 곳은 없는가?		
4. 스라브 및 벽체 등에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5. 스라브 방수부분이 들뜨거나 벗겨지는 부분은 없는가?		
6. 학교주변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7. 전기시설의 누전 및 위험성은 없는가?		
8. 노후건물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9. 학교부지의 매물, 유실, 건물의 파손은 없는가?		
10. 학교운동장의 통행로는 양호한가?		
11.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 및 피해확대가 발생되지 않는가?		
12. 수방자재는 비축 되었는가?		
13.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14. 기타 재해발생 요인은 없는가?		

(나) 구조물

시 설 물	점 검 사 항	이상유무	조 치 사 항
옹 벽	.옹벽선형이 변하였는가?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옹벽 배면 흙(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강우시 물구멍에 물은 나오는가? .기초부분의 지반변화는 없는가?		옹벽 배면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접근을 금지 시키고 안전진단 요청
석 축	.석축 배가 불러나오는가? .석축 상단이 뒤로 눕는가? .석축 배면의 배수처리는 양호한가?		옹벽 배면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접근을 금지시키고 안전진단 요청
배 수 로	.맨홀준설 상태는 양호한가? .배수로는 파손으로 지반이 침하되는곳은 없는가? .맨홀 뚜껑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배수로 이상이 있을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히므로 철저 점검
산 사 태 (비탈면)	.절개지 상부 지반에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벽면 중간부분에서 지하수가 유출하는가? .절취부 상단 배수시설은 양호한가? .비탈면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시설된 벽면 블록이 토사와 밀착되어 있는가?		강우량을 수시 파악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담 장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가? .블록담이 성토된 곳은 없는가? .웬스기초가 침하하지 않았는가?		도괴위험이 있을때에는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접근 금지